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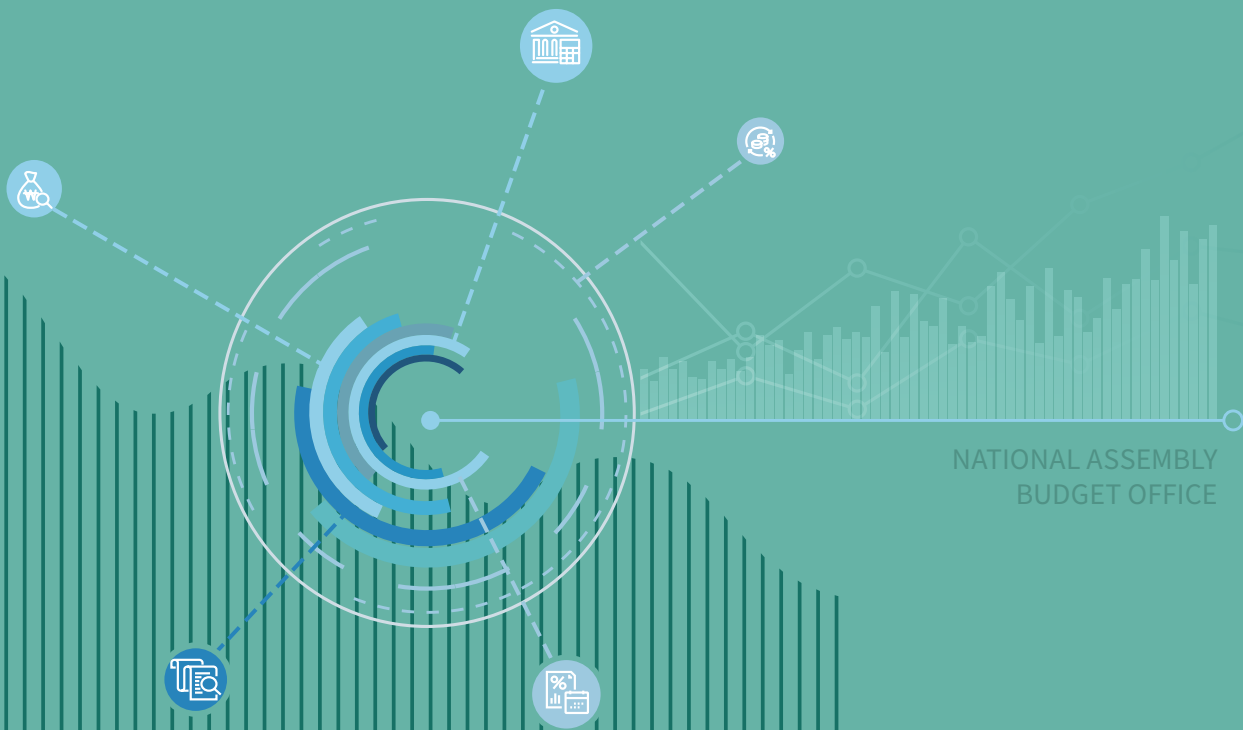
2023.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Analysis by Committee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이한성 예산분석관
정금연 예산분석관
유민호 예산분석관
박은형 예산분석관
한서영 예산분석관보

지 원 | 임윤주 행정실무원
최다운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23.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3. 10.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수입 612.1조원, 총지출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에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R&D·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전략적 자원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재정현안 등을 점검하여야 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2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3권 등 기존 5개 분석에 「재정총량 분석」 2권,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6권을 추가하여 총 27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인건비,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집행,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한편, R&D 예산안, 재난안전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사업 등 주요 정책 주제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사업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재난정책 보험 사업,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발간되는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경제·재정 전망, 조세지출과 재정 지출 연계, 재정건전성 분석 등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12대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분석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에서는 인구위기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전략, 인재양성 등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I. 예산안 개요 / 5

- 1. 현 황 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7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8

II. 주요 사업 분석 / 9

- 1. 병역명문가 관련 예산편성의 문제점 9

[대통령경호처]

I. 예산안 개요 / 17

- 1. 현 황 1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9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

II. 주요 사업 분석 / 21

- 1. 연가보상비 과다 편성의 문제 21

[국회]

I. 예산안 개요 / 27

- 1. 현 황 2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9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0

II. 주요 사업 분석 / 31

- 1. 전자도서관 운영사업 내실화 필요 31
 - 1-1. 주요 대국민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내실화 필요 33
 - 1-2.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추진계획 보완 필요 38
- 2. 국회방송운영 제작역량 및 시청자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41

[국가인권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49

- 1. 현 황 4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5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51

II. 주요 사업 분석 / 52

- 1. 보조사업 선정 시 국가인권위원회 기능과 구분 필요 5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I. 예산안 개요 / 59

1. 현 황	5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67

II. 주요 사업 분석 / 69

1.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 감액 필요	69
2. 배심제 관련 홍보비 감액 필요	74
3. 예산 범위 내 검찰청 직책수행경비 지급 필요	79
4. 특별감찰관 운영 예산 유지 여부 검토 필요	82
5. 식중독균 검출 키트 사업 감액 필요	87
6. 검사증원계획에 따라 편성된 관련 예산 반영여부 검토 필요	91
7. 법률사무증사변호사 채용 관련 예산 감액 필요	94
8. 검찰청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적정규모 검토 필요	98
9. 검찰청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 유지 필요성 검토 필요	105
10.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감액 필요	110

[법제처]

I. 예산안 개요 / 117

- 1. 현 황 11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19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20

II. 주요 사업 분석 / 121

- 1. 청년인턴 제도 운영 사업 재검토 필요 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I. 예산안 개요 / 127

- 1. 현 황 12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9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0

II. 주요 사업 분석 / 131

- 1. 공수처 소속 위원회 운영 사업 감액 필요 131

[감사원]

I. 예산안 개요 / 137

- 1. 현 황 13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9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0

II. 주요 사업 분석 / 141

- 1.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감액 및 자문위원회 자문결과의
효과성 증진 필요 141
- 2.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의 적정예산 규모 심의 필요 145
- 3. 업무망 및 인터넷망 전용회선 사용료 감액 필요 150

[대법원]

I. 예산안 개요 / 155

- 1. 현 황 15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61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62

II. 주요 사업 분석 / 163

- 1. 진술조력인 사업 감액 필요 등 163
- 2.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 유지 필요성 검토 필요 167
- 3. 국민참여재판 운영 사업의 적정 예산규모 검토 필요 171

[헌법재판소]

I. 예산안 개요 / 179

- 1. 현 황 17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1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82

II. 주요 사업 분석 / 183

- 1. 헌법재판소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183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현황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억 9,700만원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65	297	297	-	-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032억 3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6억 8,000만원(4.8%) 증가하였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4,251	98,523	103,203	4,680	4.8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433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2.1%)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35,515	42,428	43,328	900	2.1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 (A)	2024년도 정원 (B)	증감	
			B-A	(B-A)/A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90	490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212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200만원(2.9%)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212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200만원(2.9%) 증가하였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19,012	20,697	21,289	592	2.9
총액인건비 대상	-	-	-	-	-
총액인건비 비대상	19,012	20,697	21,289	592	2.9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과 유사하게 편성되었고(2023년 631억원 → 2024년 646억원), ② 청사 유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은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2023년 51억원 → 2024년 65억원).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경비 사업에서 포상금 비목의 경우, 병역명문가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4년도 병역명문가 선정계획이 다소 과다하게 추산된 측면이 있고, 기념품 제작 비용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포상금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운영관리, 시설관리 및 개선 등이 있다.

① 국정운영관리 사업은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운영 수행평가 등의 강화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은 노후설비 교체 등 시설관리 및 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2개)	국정운영관리	5,973	6,572	599	10.0
	시설관리 및 개선	5,171	6,502	1,331	25.7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병역명문가 관련 예산편성의 문제점

가. 현 황

기본경비 사업¹⁾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1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19,012	20,697	21,289	592	2.9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본경비 중 포상금(310-03목)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병역명문가 상장 수여시 지급되는 부상에 대한 비용으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3,300만이 증액되었다.

나. 분석의견

병역명문가 기념품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통령비서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기념품 제작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비서실은 그간 기본경비 사업 내 포상금 비목으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 비용을 집행해왔다. 2024년부터는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²⁾에 따라 신규로 선정한 병역명문가문³⁾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 1억 3,2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병역명문가 기념품 제작 예산 산출근거]

$$\square 2024\text{년 선정 병역명문가}(3,320\text{가문}) \times \text{대통령 기념품(벽시계 단가 } 40,000\text{원}) \\ = 132,800\text{천원}$$

자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실은 2024년에 신규로 선정할 병역명문가의 가문 수를 3,320가문으로 예상하고, 기념품 단가 4만원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그간 병역명문가 신규 선정 건수를 고려할 때,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병역명문가 신규 선정 현황]

구분	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가문	11,912	2,465	1,816	1,236	1,017	741	714	492	560	466	497
이행자	59,270	11,620	8,985	6,289	5,222	3,820	3,779	2,670	2,932	2,490	2,520
구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가문	545	301	302	192	147	132	73	92	84	40	
이행자	2,642	1,444	1,426	892	679	587	325	400	367	181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병무행정안내(7134-310) 사업의 내역사업인 병역자금심고취 사업의 내내역사업

3)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병무청에 따르면, 2024년에는 최근 3년 선정 평균 증가율(34.7%)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850가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도 이를 고려하여 2024년 신규 선정 건수를 3,320가문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역명문가는 요건을 갖춘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그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는데,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쳤다’는 것은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병역이행의 다양한 형태 중 복무기간, 복무난이도, 복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는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병역명문가 신규 선정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매년 입대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역인원도 큰 변동이 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년대비 급진적인 증가를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료는 정부에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병역명문가의 규모를 일정 부분 추정할 수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증가율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의 계획과 같이 최근 3년간 신규 선정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둘째, 포상금 지급근거와 한도에 관한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기념품 제작 비용의 성격상 일반수용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보전금(310목) 공통지침에 따르면,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포상금 관련 공통집행지침]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 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96

그런데 대통령실은 병역명문가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이 없으며,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10월 6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5월경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포상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은 법률 시행 시점인 내년 상반기에 맞추어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재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기념품 제작비용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포상금보다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 비목]

포상금(310-03)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자(또는 기관)에게 격려·포상을 위해 지급하는 상금, 상여금 및 격려금, 예산절약상여금
-------------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병무청도 2024년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예산 중 기념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예산은 병무청이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지급하는 기념품이므로 포상금으로 편성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부족하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본 사업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기념품 제작비용의 성격상 일반수용비로 집행함이 타당함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의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2024년도 예산편성 내역]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584백만원

- **병역명문가패·증서·기념품 제작 306백만원(4종×76.5백만원)**
- 시상식 등 부대비용 40백만원(1식×40백만원)
-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심의수당 1백만원(5명×0.15백만원)
- 병역명문가 발굴 홍보 9백만원(1식×9백만원)
- 병역명문가 안보강연회 등 6백만원(2회×3백만원)
- 병역명문가 시상식 행사 및 영상물 다큐멘터리 등 제작 141백만원(1식×141백만원)
- 병역명문가 명예의전당 게시 14백만원(1식×14백만원)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18백만원(1식×18백만원)
- 병역명문가 시상식 참석비 18백만원(500명×0.036백만원)
- 병역명문가 부상금 31백만원(30명×1.01백만원)

자료: 2024년도 병무청 예산안 공통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대통령경호처

1

현황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5억 2,3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억 6,500만원(694.0%) 증가하였다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8	67	532	465	694.0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1,341억 4,6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78억 2,400만원(15.3%) 증가하였다.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93,882	116,322	134,146	17,824	15.3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한편,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43)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617억 718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7,600만원(6.0%)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정원이 전년 대비 45명 증가(6.5%)분과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52,518	58,242	61,718	3,476	6.0
대통령경호처 인건비	52,518	58,242	61,718	3,476	6.0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 (A)	2024년도 정원 (B)	증감	
			B-A	(B-A)/A
대통령경호처	693	738	45	6.5

자료: 대통령경호처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61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0.2%) 감소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64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2.5%)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96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00만원(△1.9%) 감소하였다.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11,565	16,166	16,140	△26	△0.2
총액인건비 대상	5,455	6,319	6,479	160	2.5
총액인건비 비대상	6,110	9,847	9,661	△184	△1.9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경호업무정보화 예산이 감액되었고(2023년 44.32억원 → 2024년 39.89억원), ②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호·경비 예산 등이 반영되었다(2023년 169.11억원 → 2024년 262.03억원).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연례적인 연가보상비 불용에도 불구하고, 기준 정원의 증가폭에 비해 많은 연가보상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경호처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5억원 규모이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요인에 대한 위협 예방과 대응을 위해 5G, AI 등 국가전략기술을 도입하여 장비-인원-공간이 통합된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500

자료: 대통령경호처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경호장비시설개선 등이 있다.

①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호경비 확대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은 경호장비 시설개선 및 첨단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2개)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16,911	26,203	9,292	54.9
	경호장비시설개선	17,005	22,404	5,399	31.7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1

연가보상비 과다 편성의 문제

가. 현 황

인건비 사업¹⁾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4억 7,600만원이 증액된 61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52,518	58,242	61,718	3,476	6.0

자료: 대통령경호처

인건비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보수와 연가보상비로 구분되며, 2024년도 예산안은 보수(110-01목) 612억 5,900만원, 연가보상비(110-05목)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대통령경호처는 연례적인 연가보상비 불용에도 불구하고, 기준 정원의 증원폭에 비해 연가보상비를 과도하게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경호처의 연가보상비는 전년대비 9,200만원 증액된 4억 5,900만원으로 증가율은 25.2%이며 이는 인건비 사업 예산의 증가율인 6.0%의 4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01-101

대통령경호처는 다음과 같이 기준정원 증원에 따른 연가보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가보상비 기준 정원 변동 내역]

(단위: 명)

		2023년	2024년	변동
본부 (일반직)	5급	0	1	+1
	6급	50	61	+11
	7급	70	81	+11
	8급	45	51	+6
	9급	32	38	+6
본부 (경호처 공안직)	1급	1	1	-
	2급	6	6	-
	3급	26	29	+3
	3급(교육파견)	5	5	-
	4급	69	80	+11
	4급(교육파견)	3	5	+2
	5급	146	130	-14
	5급(교육파견)	1	0	-1
	6급	120	132	+12
	7급	53	53	-
	8급	15	15	-
	9급	12	12	-
경호안전 교육원 (일반직)	전문임기(가)	2	2	-
	6급	4	4	-
	7급	-	3	+3
	8급	2	2	-
	9급	1	1	-
경호안전 교육원 (일반직)	2급	1	1	-
	3급	3	3	-
	3급(교육파견)	-	1	+1
	4급	6	6	-
	5급	13	13	-
	6급	12	12	-
	7급	3	-	-3
합계		701	748	+47

자료: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준 정원은 701명에서 47명 증원된 748명으로, 증가율은 약 6.7%에 불과하다.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는 인사혁신처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5일을 편성하였는데, 경호처의 경우 각 직급별 기준 기본급이 크게 상승하여 연가보상비 예산도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경호처(본부) 일반직 7급의 경우 2023년도 예산은 기본급 308만원으로 계산하였으나, 2024년에는 350만원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편성하였다.

[연가보상비 기준 기본급 변동 내역]

(단위: 원, %)

		2023년	2024년(안)	증가율
본부 (일반직)	6급	3,850,687	4,436,295	15.2
	7급	3,080,635	3,504,664	13.8
	8급	2,277,964	2,438,586	7.1
	9급	1,931,255	2,078,343	7.6
본부 (공안직)	1급	7,424,200	8,411,364	13.3
	2급	6,592,868	7,326,624	11.1
	3급	6,352,050	7,078,903	11.4
	4급	5,159,921	5,959,207	15.5
	5급	4,075,186	6,114,423	50.0

자료: 대통령경호처 2024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경호작전횟수 증가, 경호대상자 증가, 의경 폐지에 따른 경비업무 이관 등으로 신규 채용과정에 높은 호봉의 경력직 인원을 다수 채용하여 연가보상비 산정 기준인 평균 기본급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간 현원 부족으로 인해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인 기본급이 지속적으로 하향 편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호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행정직도 기준 기본급이 크게 상승하였고, 채용 인원의 호봉 분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통령경호처 연가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매년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연가보상일수 5일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21년에는 최대 7일, 2022년에는 최대 6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은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연가보상비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연가보상일수
2022	373	373	200	173	53.6	최대 6일
2021	511	511	142	369	27.8	최대 7일
2020	565	1	0	1	0	-

주: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추경으로 연가보상비 미지급

자료: 연도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 중 연가보상비는 대통령경호처의 정원 증가폭을 고려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다소 높게 산정하여 산출하였고, 연가보상비의 연 례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1

현황

국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43억 4,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4,900만원(3.6%) 증가하였다.

[2024년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765	4,196	4,345	149	3.6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

국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7,516억 5,3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10억 9,000만원(2.9%) 증가하였으며, 국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4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55,471	730,563	751,653	21,090	2.9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

2024년도 국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4,094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1,300만원(2.9%)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 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국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375,127	397,862	409,475	11,613	2.9
사무처 인건비	323,336	339,948	350,374	10,426	3.1
도서관 인건비	27,782	30,668	31,191	523	1.7
예산처 인건비	12,427	14,185	14,619	434	3.1
조사처 인건비	11,582	13,061	13,291	230	1.8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

[2024년도 국회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국회	4,684	4,699	15	0.3

주: 예산안 첨부서류 기준(국회의원 제외)
자료: 국회

2024년도 국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346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100만원(6.0%)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346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100만원(6.0%) 증가하였다.

[2024년도 국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29,285	32,678	34,629	1,951	6.0
총액인건비 대상	-	-	-	-	-
총액인건비 비대상	29,285	32,678	34,629	1,951	6.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

2024년도 국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제22대 국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정활동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22대국회 개원경비를 편성하였고, ② 경제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초청외교 확대 등 의원외교 활동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국회 의정활동홍보 1억원, 국회방송 프로그램 직접제작 7억 6,000만원 등).

202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AI·빅데이터 기반 주요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부 시스템은 당초 계획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방송운영사업은 유사 방송 대비 과다한 재방송 비율을 감소시키고 제작 편수 증가, 콘텐츠 내실화 등을 통해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29억원 규모이다.

제22대국회 개원경비 사업은 제22대국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정활동 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22대국회 개원식 및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 실시, 사무실 환경개선, 개원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국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제22대국회 개원경비	2,947

자료: 국회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의회경호및방호, 청사유지및관리 등이 있다.

① 의회경호및방호 사업은 모바일공무원증 도입 관련 전자출입시스템 개선 및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예산 증액되었고, ② 국회청사유지및관리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원회관 정밀안전진단 등이 반영되었다.

[국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2개)	의회경호및방호	4,102	5,212	1,110	27.1
	청사유지및관리	42,731	50,323	7,592	17.8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

1

전자도서관 운영사업 내실화 필요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사업¹⁾은 국회도서관 소장 학술자료 및 정책자료를 원문 DB로 구축하고, 입법 관련 디지털 정보의 제공과 각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8,700만원 증가한 279억 5,100만원이다.

국회도서관은 1997년 제1차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사업을 신설했으며 이후 관련 시스템들을 개발, 확장하여 현재 18종 이상의 정보시스템(대외 공개포털 11개²⁾)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2021년부터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디지털 미래도서관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 국가전략정보포털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도 전자도서관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전자도서관운영	24,940	27,364	27,951	587	2.1

자료: 국회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035-500

2) 대외 공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은 14개이나 기존에 별도 사이트로 운영되다가 현재 국회전자도서관 등 다른 시스템에 배너로 구성되어 있는 3개 시스템을 제외한 포털 수이다.

[국회도서관 의정지원 · 대국민서비스 제공용 정보시스템 현황]

포털명	내 용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법안발의 및 심사과정에 뉴스, 소셜미디어 기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 국내·외 입법 통계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 제공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국회 회의록, 지방의회 회의록, 발언내용, 발언자, 의안, 회의록 단위 검색, 발언 데이터셋 다운로드, 통계, 법률 및 조례,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서비스				
국회의원정책 자료시스템	국회의원이 정책 및 입법개발을 위하여 주최하는 세미나·공청회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국회법률도서관	국내외 법률자료를 국회의 법률제정 제·개정활동에 제공, 대국민 법률 정보서비스 제공(법률쟁점DB 및 외국법률번역DB 통합) <table border="1"> <tr> <td>법률쟁점 DB</td><td>제정·개정된 법률에 대해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입법경과와 요약표로 정리하여 제공</td></tr> <tr> <td>외국법률 번역DB</td><td>외국법률에 대한 번역본을 DB화하여 제공</td></tr> </table>	법률쟁점 DB	제정·개정된 법률에 대해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입법경과와 요약표로 정리하여 제공	외국법률 번역DB	외국법률에 대한 번역본을 DB화하여 제공
법률쟁점 DB	제정·개정된 법률에 대해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입법경과와 요약표로 정리하여 제공				
외국법률 번역DB	외국법률에 대한 번역본을 DB화하여 제공				
국가전략정보포털	국회의 국가중장기발전전략 수립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이슈와 국가전략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국회 지방의회 의정보털	지방의회에서 생산된 정책정보를 수집·보존하고, 이를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Web-DB	Web-DB는 국내 및 해외의 정보원을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각 DB별로 초록, 색인, 원문 등의 정보를 제공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시스템	산재된 학술정보를 융합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서비스로 구축, 빅데이터·머신러닝 등 정제된 데이터 제공, 이용자참여형 학술정보 융합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국회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보유 자료검색 및 원문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				
전문가정보 데이터베이스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정보를 공유,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필 등을 수록한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				
입법지식서비스	국내주요정책정보, 외국정책자료, 의회정보실 발간자료 등의 의회정보 관련 콘텐츠를 통합하여 제공				

주: 국회도서관 및 국회부산도서관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앱, 국회기록보존소 별도
자료: 국회

1-1. 주요 대국민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내실화 필요

가. 현 황

전자도서관운영사업³⁾은 2021년부터 AI·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입법·의정활동 지원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자료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2024년도 예산안 중 이들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2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국회도서관 대국민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안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371	442	408
학술연구자정보 공유 시스템	164	164	148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시스템	289	289	164
국회도서관홈페이지	-	95	247
국회법률도서관	123	123	123
국회의원정책자료	-	-	-
국가전략정보포털	-	146	118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	-	-
국회전자도서관	679	529	374
국회지방의회의정보포털	243	243	243
국회기록보존소	157	157	139
국회부산도서관 홈페이지	124	124	124
합 계	2,150	2,312	2,088

자료: 국회

3) 코드: 일반회계 3035-500

나. 분석의견

AI·빅데이터 기반 주요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부 시스템은 당초 계획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회)전자도서관 운영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각종 시스템 가운데 전자도서관시스템,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시스템 등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AI·빅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 서비스들 중 일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이용 건수가 100~400여 건 수준이다.

[국회도서관 주요 정보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천명,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9	
				연간	일평균(명)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15	27	53	119	436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97	44	37	30	109
국회법률도서관	37	67	151	265	971
학술연구자정보 공유 시스템	44	57	154	264	966
국회의원정책자료시스템	145	79	143	246	901
국회기록보존소	42	46	42	35	129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시스템	4,244	3,574	5,277	3,377	12,373

자료: 국회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는 일평균 30만건 이상의 뉴스와 소셜미디어 데이터에서 국회와 관련한 최신 이슈를 탐지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이슈 변화 추이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일평균 이용자가 436명에 불과하다.

특히, 동 시스템의 목적이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현안파악 및 이슈발굴을 위한 분석 데이터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직원 중 이용자는 일일 평균 29명 수준이다.

[2021~2023년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일평균 이용현황]

(단위: 명)

2021		2022		2023.9	
일반국민	국회직원	일반국민	국회직원	일반국민	국회직원
49	25	119	27	407	29

자료: 국회

법률쟁점 DB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등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국회의원 및 보좌진, 그리고 18개 상임위원회 직원 260명을 대상으로 한 「의회 및 법률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지율이 법률쟁점 DB 33.5%,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36.2%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의회·법률정보서비스시스템 국회구성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

(단위: %, 점(100))

시스템명	인지율	종합 만족도	적시성	정보내용(질)	편익성
법률쟁점DB	33.5	74.1	74.6	74.1	73.7
전문가정보 데이터베이스	36.2	71.7	73.3	71.6	70.3
외국법률번역DB	47.3	74.7	73.4	74.2	76.6

자료: 국회

이러한 주요 시스템은 구축과 유지보수를 위해 상당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기존 전자도서관 사업에서 운영해온 시스템 및 서비스와 차별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법률쟁점DB는 구축 목적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쟁점’들을 입법경과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해당 DB에 게시된 대부분의 법안은 ‘주요쟁점’에 대한 분석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제·개정된 법률의 입법 목적, 개요 및 내용, 법률안 반영 여부만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신 쟁점법률로 게시된 「전자정부법」을 보면 입법목적, 법률개요, 제·개정내용, 관련의안명(이전 회기 발의되어 폐기된 법안)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키워드’로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권고 등이 나열되어 있으나 이러한 핵심어만으로는 해당 법률 개정 당시 무엇이 쟁점사항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법률쟁점 DB 및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정보 제공 화면]

법률쟁점 DB

전자정부법

공포일: 2022.11.15 |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제33차 일부개정 [사행 2023.05.16] [법률 제19030호, 2022.11.15, 일부개정]

현행법률 보기

요약표 다운로드

입법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률개요

이 법은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적 행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개정내용

연대표

I 주요 제정·개정 내용

1. 전자정부서비스 개선방안 권고(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행정기관등의 장은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출된 개선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방안에 반영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의견을 채택하도록 함

서법수의원안

관련의안

위원회자료

국회동과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법수의원 대표발의) (2021. 11.8.) 2113167

2

쟁점키워드

적정성 검토, 개선 방안 권고, 폐기 방안, 개선 방안 변경

의안정보시스템

•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13167	2021-11-08	서법수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9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서비스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부담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에 비하여 사용률이 저조하여 그 효과가 미비하고, 어플리케이션 간 기능의 중복으로 실질적인 운영가치가 매우 낮을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 더보기

•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1-11-09	2022-02-14	2022-09-22	수정가결	 입력보고서  심사보고서  위원회결의결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393회 국회(일시) 제3차 전체회의	2022-02-14	상정/제안일명/검토보고/처리토론/소위원회	 표의
제400회 국회(정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2-09-20	상정/의결(수정가결)	 표의
제400회 국회(정기) 제3차 전체회의	2022-09-22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표의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2-09-27	2022-10-26	2022-10-26	원안가결	 표의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	-----	------	-----

이는 기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의 접수 → 위원회심사 → 체제자구심사 → 본회의심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각 단계별로 심사경과와 함께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과 차별성이 낮으며 이 시스템에서도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회의록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안정보시스템은 법률안에 대해 건별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반면, 2023년 9월 기준 가장 최신 사안이 2022년 11월에 개정된 것이다.

더불어 국회법률도서관에서 202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현안입법 알리기 DB에서도 특정 현안관련 법률의 제·개정사항에 대해 입법배경, 국회 논의과정, 개정의 의, 조문비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회법률도서관 현안입법알리기 DB 화면]

Data&Law

[현안] 국회의원 · 지방선거 피선거권 18세로 하향

법률명 : 공직선거법

발간일 : 20220125 | 호수 : 2022-1호 | 상임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원연맹(IPU)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은 40세 이하 청년의원의 비율이 3.7%임. 독일 28.9%, 프랑스 23.2%, 영국 21.7%, 미국 6.7%, 일본 6%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청년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함. 해당 자료에 포함된 142개국 중 136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청년 대표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피선거권 관련하여 1948년 「국회의원선거법」 제정 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1988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함. 이후 여러 번의 제·개정을 거쳤고,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시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음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함

키워드

피선거권 연령, 현안입법알리기

국회도서관은 이에 대해 외국법률번역DB 등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했던 3개 포털을 법률도서관 등 기존 포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법률쟁점DB의 경우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기존 DB만을 제공하는 등 최근 구축된 주요 시스템들의 정비와 함께 활용도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들은 기존 국회도서관 포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음에도 기운영 중인

국회에산정책처 • 37

시스템과의 차별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인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국회직원들의 수요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현재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이용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콘텐츠를 재정리하고,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통합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추진계획 보완 필요

가. 현 황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은 각 지방의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정 자료들을 국회의 입법·정책정보와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또는 지방의회 상호 간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구축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코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입법자료지원 (3032-300)	210-01	3	3	3	3	3
	210-05	1	1	1	1	1
	240-01	1	1	1	1	1
전자도서관운영 (3035-500)	260-01	323	291	243	243	243
합 계		328	296	248	248	248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국회지방의회의정보포털은 지방의회에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보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와의 연계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은 2014년에 17개 시·도의회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2023년부터는 국회 및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자료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지방의회 시스템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5년 만에 모든 지방의회의 시스템이 연계되도록 구축이 완료된 반면, 시스템 접속 건수는 2023년 9월 기준 17만 1,670건으로 92개 지방의회만 연계되었던 201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데 그쳤으며, 142개 의회와 연계되었던 2020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5년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구축 실적 및 이용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9
연계 실적(누적)	92개	142개	192개	243개	
접속	167,341건	174,333건	259,897건	159,715건	171,670건

자료: 국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의안·회의록), 자치법규·법률 정보, 정책정보 및 지역홍보뉴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정보에 대한 것으로 이 중 많은 부분은 이미 다른 부처에서 오랜 기간 운용해 온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다.

예를 들어 자치법규 정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별 자치법규와 관련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 주요 정책이나 알림사항, 지역홍보뉴스는 2007년도부터 서비스를 실시해 온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연평균 접속 건수는 2022년 기준 29만 9,286건으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높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습득할 수 있는 해당 시스템에서 정보를 얻을 유인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⁴⁾

4)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전체 자치법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예고,

더불어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회의정정보는 의안정보, 회의록, 국정감사보고서, 예·결산 보고서로 모두 국회 내 여러 시스템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동 시스템에 별도 접속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할 유인이 낮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사무감사, 주제별 지방의회 심의결과 자료제공 등 타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치법규현황(통계), 우수조례에 관한 정보와 자치법규 비교검색, 자치법규 지도검색 등을 제공하고 있음. 19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정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가. 현 황

국회방송운영사업¹⁾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5,000만원 증액된 16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국회방송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회방송운영	13,527	15,619	16,969	1,350	8.6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국회방송운영사업은 유사 방송 대비 과다한 재방송 비율을 감소시키고 제작 편수 증가, 콘텐츠 내실화 등을 통해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방송운영 사업은 국회의 회의 및 입법·의정활동에 특화된 프로그램 자체 제작사업, 국민 여론 수렴프로그램과 심층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외주제작 사업과 프로그램 구입, 장애인 시청지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직접제작과 외주제작을 위한 예산이 증액하여 왔으며, 국회방송 채널 외에 비디오플랫폼(Youtube) 특화프로그램 제작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36-300

[국회방송운영 프로그램 제작·확보를 위한 내역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프로그램직접제작	2,058	2,479	3,103
방송시스템 임차	2,231	2,398	2,989
외주제작	2,514	2,639	2,967
민간근로자 인건비 등	2,692	2,750	2,823
프로그램 구입	978	1,043	1,043

자료: 국회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체제작 프로그램 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 8편으로 동일한 제작편수를 나타내며 2023년에만 1편 증가한 9편이 제작되었다.

[2019-2023년 국회방송 자체제작프로그램 현황]

연도	편수	프로그램명
2019	8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획대담(2)/통통입법토크쇼를아놀자/의정중계하이라이트/생방송 NATV오늘/NATV뉴스/정치토론 왓가왓부/특집프로그램
2020	8	뉴스N/뉴스945/오유경의인생책방/NATV이슈토론/통통입법토크쇼를아놀자/의정중계하이라이트/오늘의의정사/특집프로그램
2021	8	뉴스N/뉴스945/알면당신도법테랑/정치톡톡사이다/오유경의 인생책방/의정중계하이라이트/오늘의의정사/특집프로그램
2022	8	뉴스N/뉴스945/알면당신도법테랑/정치톡톡사이다/오유경의 인생책방/의정중계하이라이트/정관용의정책토론/특집프로그램
2023	9	국회라이브1/국회라이브6/의정뉴스945/우리들의법/인생책방/의정중계하이라이트/정관용의정책토론/특집프로그램/오늘의의정사

자료: 국회

제작 및 외주프로그램 수에 변화가 없음에 따라 매년 본방송 비율이 줄어들고 재방송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방송 비율 수준을 채널의 목적성이나 조직규모

등에서 유사한 한국정책방송(KTV)과 비교해도 최근 3년간 KTV의 경우 평균 46.7% 수준인데 반해 국회방송은 63.0%로 16.3%p 높다. 또한 제작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방송 비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국회방송 채널 연간 본방송시간 및 재방송 비율]

(단위: 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본방송시간	86,575	83,854	77,870	78,700
재방송 비율	60.4	60.9	63.5	63.7

주: 본방송/재방송시간은 연말에 통계처리하여 2023년 자료 미기재
자료: 국회

[2020~2022년 주요 방송사별 재방송 비율]

(단위: %)

연도	2020	2021	2022
국회방송	60.9	63.5	63.7
KTV	40.4	49.9	48.8

주: KTV의 2023년 9월말 현재 재방률은 40.9%임.
자료: 국회

높은 재방송 비율은 방송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입법·의정활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며, 방송 채널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저하시킬 수 있다.

더불어 제작된 프로그램의 콘텐츠 자체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널의 시청률을 결정하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및 선호도에 기반하는데, 시청자의 선호를 유인할 콘텐츠 발굴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시청률의 증가율에도 제약이 있다.

[2020~2023년 국회방송과 유사방송 시청률 및 자체제작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프로그램), %)

구분	방송명	2020	2021	2022	2023.9
자체제작 프로그램	국회방송	8	8	8	9
	한국정책방송(KTV)	46	37	47	50
시청률	국회방송	0.040	0.044	0.052	0.037
	한국정책방송(KTV)	0.079	0.062	0.040	0.041

자료: 국회

이러한 점 때문에 사업의 성과지표인 시청자 만족도 역시 최근 5년간 목표인 70점에 미달하고 있으며 매년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월평균 시청률 증가 폭²⁾이 높지 않으며, 2023년에는 오히려 이전 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2019~2022년 국회방송 시청자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9	2020	2021	2022
목표(점)	70	70	70	70
실적(점)	69.9	68.8	67.8	62.1
달성도(%)	99.9	98.3	96.9	88.7

주: 2023년은 12월 실시예정

자료: 국회

국회는 이에 대해 채널방송에서 나아가 방송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에 게시할 콘텐츠들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 하면서 기본채널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 유튜브 채널 콘텐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유튜브 채널 콘텐츠 중에 자체 제작프로그램 비중은 높지 않고, 콘텐츠 수에 10분 내외의 기본 영상과 함께 이를 요약한 여러 편의 Shorts(1분 내외 영상), 예고편들이 모두 계상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도별 조회수를 보면 2020년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을 보여 다수의 시청자를 유인할 수 있는 핵심콘텐츠 개발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다.

2) 전국 IPTV 224개 채널에 대해 조사한 시청률 자료에 근거함(조사기관: 닐슨)

[2020-2023년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운영현황]

(단위: 건, 회)

연도	콘텐츠	연도별 조회수	콘텐츠당 평균조회수
2020	1,999	7,514,456	3,759
2021	2,111	3,762,505	1,782
2022	2,037	3,611,341	1,773
2023.9	2,264	6,255,707	2,763

자료: 국회

따라서, 국회는 국회방송의 재방송 비율 축소, 콘텐츠 다양성 강화, 제작역량 제고 등을 통해 시청자 만족도와 시청률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700만원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다.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0	27	27	-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13억 3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9,000만원(0.7%) 증가하였다.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9,105	41,013	41,303	290	0.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14개 세부사업 중 8개의 세부사업이 2023년 대비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② 이 중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에 장애인 등 대상 인권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③ 2022. 7. 1. 신설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군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을 신설하였다. ④ 그 외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에서 3,100만원,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사업에서 2,300만원, 군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에서 1억 400만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다.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정책개선을 목적으로 인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권단체 활동의 대상과 역할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선정을 위해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5억 1,200만원 규모이다.

군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은 군인권 정책·제도 개선, 조사 등을 통한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군인권 보호 및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군인권보호 및 증진	51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상담접근성 제고를 위한 화상채팅상담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으로 신규로 반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77	423	246	139.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

보조사업 선정 시 국가인권위원회 직접수행 사업 간 구분 필요

가. 현 황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지원 사업¹⁾은 국내교류협력의 내역사업으로, 인권 현안에 대해 시민단체와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인권 과제를 공모하여 보조사업 단체를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00만원 감액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국내교류협력	244	254	217	△37	△14.57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지원	188	188	170	△18	△9.5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정책개선을 목적으로 인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사업과 국가인권위원회 직접수행 사업 간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시 수행주체를 고려한 사업계획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 및 수립하고자 과제를 공모하여 시민단체를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지원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2438-402의 내역사업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편성된 1억 8,800만원 내에서 16개의 인권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1억 7,000만원 규모로 시민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한 주제와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의 현황을 보면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자, 성소수자, 군인권 피해자, 여성 등에 해당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인권취약분야 계층과 대상이 동일하다. 또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은 인권위원회 대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 및 수립하기 위해서 각종 조사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세부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조사, 연구용역, 모니터링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인권문화 확산,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군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의 세부사업에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위원회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고 있다.

[인권위 세부사업별 취약인권 지원 현황]

세부사업명	시민단체 지원
지역인권문화 확산	○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
취약분야 인권개선	
장애인 인권증진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
군인권 보호 및 증진	○
북한인권개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매년 반복하여 동일한 시민단체가 선정 및 지원되고²⁾,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지정 및 자율주제도 매년 동일하게 공시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세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각 취약계층 사업 내에서 정책조사 및 시민단체 협력 활동 중 일부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인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시민단체 활성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인권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선정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2) 최근 6년간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구성을 보면, 2023년까지 선정된 보조사업 62건 중 동일 단체에 2회 이상 선정된 건이 31건(50%)으로 동일한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음(2022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법무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교도작업특별회계) 및 1개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조 6,106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99억원(1.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3,530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05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71억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1,413,126	1,467,313	1,473,521	6,208	0.4
- 일반회계	1,295,093	1,345,834	1,352,992	7,158	0.5
- 교도작업특별회계	118,033	121,479	120,529	△950	△0.8
기 금	113,783	113,347	137,054	23,707	20.9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783	113,347	137,054	23,707	20.9
합 계	1,526,909	1,580,660	1,610,575	29,915	1.9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조 5,474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366억원(3.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조 2,899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05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71억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4,183,635	4,297,481	4,410,386	112,906	2.6
- 일반회계	4,073,951	4,176,002	4,289,857	113,856	2.7
- 교도작업특별회계	109,684	121,479	120,529	△950	△0.8
기 금	113,783	113,347	137,054	23,707	20.9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783	113,347	137,054	23,707	20.9
합 계	4,297,418	4,410,828	4,547,440	136,613	3.1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법무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교도작업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4,73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2억원 (0.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3,530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05억원이다.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295,093	1,345,834	1,352,992	7,158	0.5
교도작업특별회계	118,033	121,479	120,529	△950	△0.8
합 계	1,413,126	1,467,313	1,473,521	6,208	0.4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4조 4,104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129억원(2.6%)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조 2,899억원, 교도작업특별 회계 1,205억원이다.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070,612	4,176,002	4,289,857	113,856	2.7
교도작업특별회계	109,684	121,479	120,529	△950	△0.8
합 계	4,180,296	4,297,481	4,410,386	112,906	2.6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법무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71억원으로 전년 계획안 대비 237억원(20.9%) 증가하였다.

[2024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783	113,347	137,054	23,707	20.9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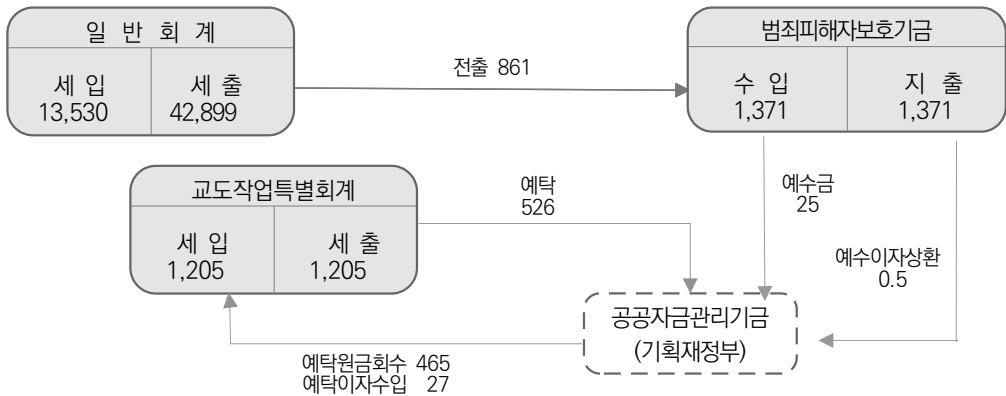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4년도 예산안의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61억원이 전출된다.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26억원을 예탁하며, 예수원금 및 이자 492억원을 회수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861억원이 전입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5억원의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주: 총계기준
자료: 법무부

마.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조 6,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8억원 (3.4%)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정원이 전년 대비 26명 증가하고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2,402,518	2,535,242	2,621,040	85,798	3.4
본부 인건비	177,744	187,269	187,915	646	0.3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인건비	149,743	157,706	166,631	8,925	5.7
검찰청운영인건비	764,424	803,946	829,262	25,316	3.1
법무연수원인건비	11,943	14,647	15,471	824	5.6
교도소운영인건비	1,090,324	1,152,612	1,190,157	37,545	3.3
소년원운영인건비	60,188	63,878	65,600	1,722	2.7
치료감호소운영인건비	28,179	30,708	32,507	1,799	5.9
보호관찰소운영인건비	119,973	124,211	133,225	9,014	7.3
특별감찰관인건비	-	265	272	7	2.6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2024년도 법무부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법무부	34,568	34,594	26	0.1

자료: 법무부

2024년도 법무부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608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900만원(3.3%)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702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000만원(2.0%)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906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9,900만원(4.4%) 증가하였다.

[2024년도 법무부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152,742	155,649	160,858	5,209	3.3
총액인건비 대상	66,320	68,800	70,210	1,410	2.0
총액인건비 비대상	86,422	86,849	90,648	3,799	4.4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2024년도 법무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기금 계획안이 대폭 증액되었고(2023년 173억원 → 2024년 211억원), ② 법무부 기록관 개청(2023. 11. 예정)에 따라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증액되었으며(2023년 47억원 → 2024년 77억원), ③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약 수사 사업 예산이 첨단 마약수사장비 도입 등을 위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2023년 48억원 → 2024년 83억원).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특별감찰관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장기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활동이 없음으로 동 프로그램 예산을 감액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이 실시되는 등 특별감찰관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비비를 신청하여 배정받는 방법을 통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사 준칙 개정 예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으로 검찰청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되었으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개정으로 인하여 검찰 직접수사건수 및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감소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적정규모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무부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에 대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가 동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차원에서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성가족부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3,05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은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전환 및 범죄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는 검찰 과학수사의 차세대 역량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융합연구개발 사업이고,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사업은 국제규범·분쟁 이슈 관련 정부부처 법률지원 기능 강화 및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사업이며,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R&D)은 전자발찌 부착 사범 재범 억제를 위한 선제적 예방 중심 전자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1,800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381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R&D)	877
합 계		3,058

자료: 법무부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마약수사,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법무부 기록관 운영,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 등이 있다.

① 마약수사 사업은 첨단 마약수사장비 도입, 마약수사전담조직 운영 및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사업은 사회복지 무요원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청년인턴이 신규로 반영되고, ③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은 법무부 기록관 개청(2023. 11.예정)에 따른 운영비 등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④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은 기관 이전, 법령에 개정에 따른 안전, 친환경시설 구축 등이 반영되었고, ⑤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법무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5개)	마약수사	4,857	8,312	3,455	71.1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10,086	16,802	6,716	66.6
	법무부 기록관 운영	4,730	7,740	3,010	63.6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2,313	15,568	3,255	26.4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17,270	21,099	3,829	22.2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1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 감액 필요

가. 현 황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¹⁾은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9,300만원이 증액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공판활동지원	2,161	2,561	2,125	△436	△17.0
공판역량강화 지원	-	102	295	193	189.2
일반수용비(210-01)	-	89	89	-	-
사업추진비(240-01)	-	13	206	193	1,484.6

자료: 법무부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공판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각목명세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은 각목명세서 상 일반수용비 8,900만원과 사업추진비 2억 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사업코드: 일반회계 1337-300의 내역사업

[2024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상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 예산내역]

(단위: 천원)

내역	금액
일반수용비	210,828
2. 공판역량강화 지원	89,000
사업추진비	224,743
2. 공판역량강화 지원	206,00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공판역량강화 사업의 사업추진비를 전년대비 1,400% 이상 증액하였는데, 가장 큰 증액 사유로 제시한 검사의 공익대표전담팀 활동은 검찰청이 검사의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추진비 증액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증액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판역량강화 사업은 공소유지를 위한 공판준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동 사업의 사업추진비를 1,400% 이상 증액하였는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사업추진비 증액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23~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상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 예산내역]

(단위: 천원, %)

내역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2023	2024	증감액	증감률
일반수용비				
2. 공판역량강화 지원	89,000	89,000	-	-
사업추진비				
2. 공판역량강화 지원	13,000	206,000	193,000	1,484.6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공판역량강화 사업의 사업추진비 증액 사유로 “검사의 공익대표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한 증액”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각급

검찰청에 “검사 1인, 수사관 1인 이상”으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구성²⁾하고 전담팀의 간담회와 ② 유관기관(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간담회, 우수사례집 발간 및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편성기준 등의 집행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검사의 정원을 2,512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³⁾”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이러한 검사 인원의 부족을 감안하면, 각급 검찰청에 구성되는 공익대표 전담팀은 결국 점임을 하는 사례가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검사들의 업무부담 과중으로 인해 실제 공익 대표 전담팀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2024년도 예산안의 증액된 사업추진비는 공익 대표 전담팀의 간담회 등의 비용으로 쓰이기보다는 기존의 주요 사업추진비 편성 목적인 공판과정에서의 대응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등에 사용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⁴⁾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⁵⁾으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검사는 기존의 조서 중심 공판 대응에서 물적증거 확충 및 양형 사유 구체화 등의 공판역량 증진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공판검사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나 증거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220-01) 등의 추가 편성을 통하여 공판검사의 역량을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공판검사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추진비(240-01)를 증액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전담·점임 여부는 각급 청 규모에 맞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정부제출안,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2. 12. 21.)”, 의안번호 제2119063호

4) 사업추진비의 특성 상, 내역사업인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5)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특히 공소제기 사건 수도 2018년 65만건에서 2022년 55만건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를 위한 사업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⁶⁾

[최근 5개년 간 공소 사건 수]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소제기 사건 수	652,628	632,546	597,894	516,329	547,827
공소유지 사건 수	자료 없음				

주: 각 회계연도 연말 기준

자료: 법무부

또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세목인 사업추진비는 외빈초청 경비 또는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 경비를 대표적인 사용처로 적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2023년 대비 1,400% 이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6) 다만, 법무부는 공소제기 수만으로 공판 업무가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유지 과정에서의 건난이도, 입증책임의 이행 정도, 재판의 장기화 등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3. 업무추진비(240목)

원칙적으로
사업추진비는
주요사업비,
관서업무비는
기본경비로 요구

1. 적용대상

- ☐ 사업추진비(240-01)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 경비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를, 당정 협의, 언론인·직원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

자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39

동 사업의 목적인 공판검사의 공소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거법령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판과정에서의 실수사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공판 검사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판검사가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추진비를 증액하는 것보다 사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의 사업추진비 증액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증액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배심제 관련 홍보비 사업¹⁾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배심제 관련 홍보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공판활동지원	2,161	2,561	2,125	△436	△17.0
배심제 관련 홍보비	59	59	59	0	0

자료: 법무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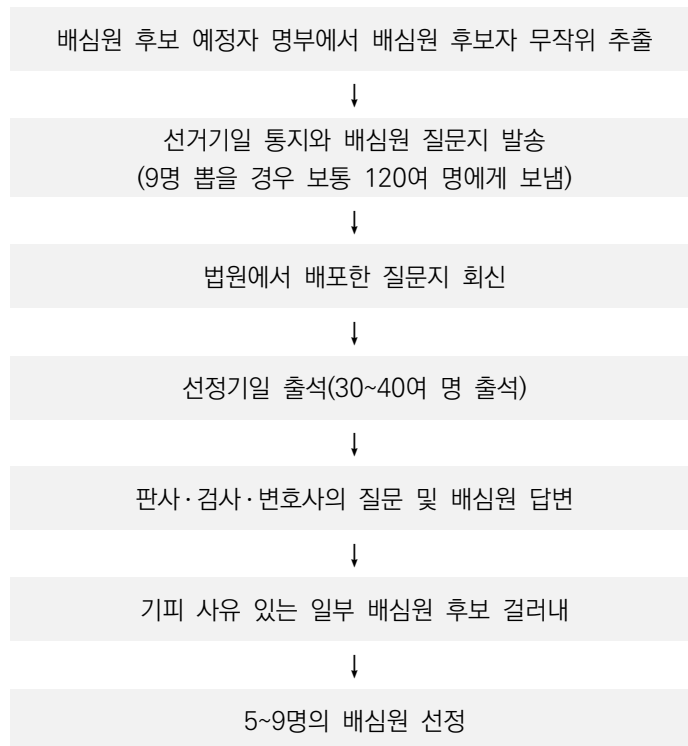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제도로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 결정²⁾³⁾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심원은 무작위로 추출된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 1) 사업코드: 일반회계 1337-300의 내역사업
- 2)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

배심원 선정과정을 보다 자세히 보면, 지방법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배심원 후보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중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면 법원⁴⁾이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있다.

[배심원 선정 절차]



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필요시 검사·변호인도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제 관련한 홍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의 주무부처인 대법원에 해당 제도의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중복편성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 예산의 감액 및 대법원으로의 사업 일원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배심제 관련 홍보비사업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무부는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주관기관은 대법원으로서 2024년도 예산안에 1억 8,600만원의 국민참여재판제도 교육 및 홍보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편성의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제도 교육 홍보 사업 2024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요구 내용

- 국민참여재판제도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필요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홍보물(포스터 등)	각종 매체 광고	합계
15	58	113	186

-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지원: 15백만원
 - * 18개 지방법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지원
-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배심원안내서, 홍보만화, 배심원 등 기념패) 배부: 58백만원
 - * 포스터: 2,500부 × 2,000원 = 5백만원
 - * 리플릿: 70,000부 × 100원 = 7백만원
 - * 배심원 안내서: 20,000부 × 700원 = 14백만원
 - * 홍보만화: 20,000부 × 700원 = 14백만원
 - * 배심원 등 기념패: 3,000개 × 6,000원 = 18백만원
- 국민참여재판 홍보(TV 등 각종 매체 등): 113백만원
 - * 온라인 홍보: 10백만원 × 6개월 = 60백만원
 - * TV광고: 13백만원 × 4개월 = 53백만원

자료: 대법원

단일 제도에 대한 홍보업무를 다수의 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홍보사업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므로,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도 국회 결산 심의 당시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내용 등의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청 수사 관련 민원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대법원의 배심제 홍보사업과 차별화하여 진행을 할 것이며, 법무부 소속 기관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겠다는 조치결과보고(2021. 1.)를 하였다.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예산 편성 필요성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

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2021. 1.)
2020년 (2019 회계연도 결산)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 예산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특화된 홍보방식을 고안하여 대법원과 업무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홍보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검찰수사단계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홍보·안내는 피의자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 권리보호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관련 예산이 필요함 - 향후, 검찰청 수사 관련 민원인(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법원의 배심제 홍보사업과 차별화하여 진행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률구조공단,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및 유관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대전·부산 솔로몬로파크 등을 통하여 배심원으로 활동 가능한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겠음 • 조치사항: 조치완료 • 조치일자: 2020-12-31

자료: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21. 1.)

그러나, 2022년도 법무부의 배심제 홍보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요청에 대해 라디오 광고를 통해 홍보하였고,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다는 회신만 제출하는 등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 집행관리 및 성과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 광고를 통한 홍보(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 2022년 예산 58,620천원 전액 집행

자료: 법무부

특히,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에서 밝힌 “검찰청 수사 관련 민원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법원의 홍보사업과 차별화하겠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단순히 라디오 광고를 통해 집행한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후보자가 배심원 선정기일에 참석하도록 하여 연령별·성별·직업별로 다양한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⁵⁾, 이를 위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⁶⁾⁷⁾

이러한 측면에서 법무부의 시정조치결과보고의 “검찰청 수사 관련 민원인 등에 초점”을 두어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 자체도 배심원 후보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무작위로 선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타겟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⁸⁾

따라서, 대법원에서 동 제도의 홍보활동을 전담하도록 일원화하여 동 사업의 주 대상인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법무부에 편성된 배심제 관련 홍보비 감액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5) 교육수준이 높거나 재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민 만이 주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되는 경우 동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6) 특히, 국가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 후보자가 되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배심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타겟형 홍보가 유용할 수 있다.

7)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에 출석하는 실제 출석률은 30%에 불과하다.

8) 다만,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된다는 점에서 신청 비율을 높일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 피의자의 경우 국선번호인이라도 선임이 되기 때문에 동 제도 신청의 존재 및 유불리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¹⁾의 직책수행경비는 검찰청 내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250-02목)가 편성된 것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5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검찰청 직책수행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30,781	30,865	31,525	660	2.1
직책수행경비(250-02)	15,560	15,213	15,570	357	2.3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검찰청은 직책수행경비를 기준단가에서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범위인 50%의 최대한도로 지급하기 위해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직책수행경비를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의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2018년 154억원 부터 2022년 152억원까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의 경우 2018년에 144억원, 2019년에 149억원, 2020년에 152억원, 2021년에 157억원, 2022년에 155억원으로 집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편성된 예산의 총액을 넘어서 타 사업비를 이·전용하여 직책수행경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2020년 3,500만원, 2021년 5억 7,500만원 2022년은 3억 4,700만원을 다른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직책수행경비로 사용하였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18-202

[연도별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의 직책수행경비(250-02)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18	15,375	△989	14,386	14,385	1
2019	15,567	△633	14,933	14,933	-
2020	15,167	35	15,202	15,200	2
2021	15,099	575	15,673	15,650	24
2022	15,199	347	15,546	15,544	2

주: 예산액은 각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예산 기준임

자료: 법무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동 경비는 지급단가에 따라 집행하되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 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 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확정된 예산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직책 수행경비 추가 지급을 위해 다른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여 최대한도인 50%에 맞추어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아니다.³⁾

대법원의 경우에는 2020년 법관들에게 지급할 직책수행경비 예산이 부족해지자 기준단가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급분 규모를 줄여, 11월부터 감액지급한 바 있다.

2) 즉, 국장급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의 추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p.88 참조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법관에 대해 감액 지급한 사례]

(단위: 천원)

구분	2020. 1월 ~ 10월	2020. 11월 ~ 12월	감액 규모
법원장	1,330	1,130	200
고법부장(수석)	1,150	980	170
고법부장	1,050	900	150
지법부장(법원장)	1,150	980	170
지법부장(수석)	1,050	900	150
지원장	1,050	900	150
15호봉~17호봉지법부장	850	730	120
15호봉~17호봉법관	820	710	110
14호봉지법부장	820	710	110
10년~14호봉법관	815	710	105
10년미만법관	415	415	-

자료: 대법원

그러나, 검찰청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추가지급할 수 있는 50%의 최대한도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이·전용하여 직책수행경비로 추가 지급해왔다.

따라서, 검찰청은 2024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직책수행경비로 사용하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액 한도 내에서만 추가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¹⁾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특별감찰활동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1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특별감찰관 운영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	619	997	1,009	12	1.2
특별감찰관 인건비	-	265	272	7	2.6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100	333	333	0	0
특별감찰활동	519	399	404	5	1.3

자료: 법무부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의 중도사직(2016. 9.) 이후 감찰과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다가 2018년 4월 특별감찰과장 및 잔여 감찰담당관의 임기만료 퇴직으로 과장직무대행체제 종료 후 정원 8명 대비 현원 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파견 공무원(파견 2명, 공무원 1명)이 인력, 예·결산 및 국회 대응, 문서 및 시설 관리 등 특별감찰관 임명 시 조직 운영 재개를 대비하여 조직 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을 수행 중이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800

[특별감찰관 정·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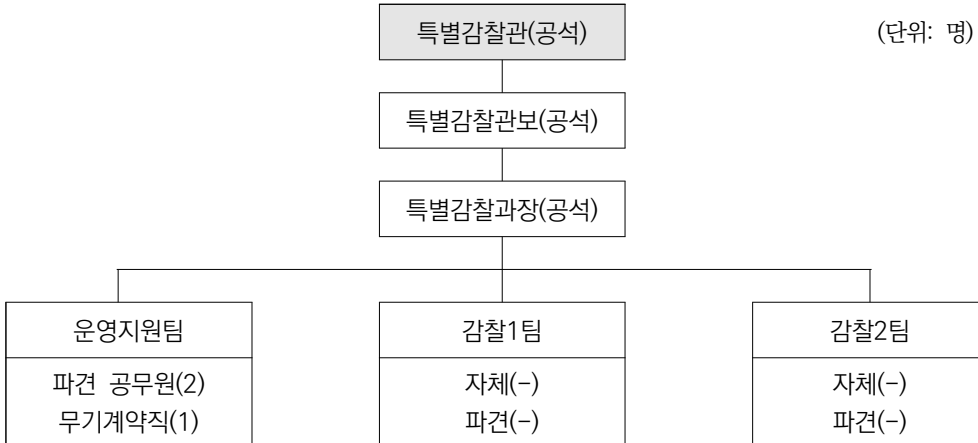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총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별정직 3·4급	별정직 5급
정원(현원)	8(0)	1(0)	1(0)	1(0)	5(0)

자료: 법무부

[특별감찰관 조직 현황]

(단위: 명)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장기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활동이 없음에도 매년 5억원이 넘는 예산이 사무실 유지를 위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국회의 인사청문이 실시되는 등 특별감찰관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비비를 신청하여 배정받는 방법 등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동 프로그램 예산의 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는 2016년 9월부터, 특별감찰과장 및 감찰담당관은 2018년 4월부터 공식으로 특별감찰활동은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활동 재개를 대비하여 공식인 특별감찰관실 인원 및 존재하지 않는 운전원 등의 인건비를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매년 불용 및 전용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사업²⁾ 및 특별감찰

활동 사업³⁾의 경우 특별감찰활동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공공요금, 사무실의 사무용품 및 기타직 근로자 임금 및 수당으로 집행되었다. 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가장 큰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실 임차관련 비용으로 2022년 월 임차료 3,490만원, 관리비 1,680만원을 지급하여 연간 5억 1,700만원이었다. 다만, 특별감찰관 인건비 사업⁴⁾의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현원이 0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혀 집행되지 아니하였다.⁵⁾

[연도별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용
		본예산	추경					
특별 감찰관 인건비	2019	777	777	△210	567	-	567	-
	2020	372	372	△368	4	-	4	-
	2021	376	376	△269	107	49	58	소속 공무원 2018년 미지급 보수 지급
	2022	266	266	△28	238	-	238	-
	2023	265	265	-	265	-	-	-
특별 감찰관 기본경비	2018	388	388	-	388	129	259	기타직 근로자 상용임금 및 수당, 사무용품 구입,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등
	2019	386	386	-	386	96	290	
	2020	383	383	-	383	94	289	
	2021	333	333	△140	193	98	95	
	2022	333	333	△99	235	100	135	
	2023	333	333	-	333	-	-	
특별 감찰 활동	2018	1,039	1,039	-	1,039	606	433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등
	2019	519	519	210	729	727	1	
	2020	383	383	368	751	749	2	
	2021	364	364	409	773	772	1	
	2022	399	399	127	526	519	7	
	2023	399	399	-	399	-	-	

주: 추경은 각 회계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2) 코드: 일반회계 1818-250

3) 코드: 일반회계 1831-300

4) 코드: 일반회계 1802-150

5) 2021년에 2018년에 발생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보수가 일부 집행된 바 있으며,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건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2020~2021년에 국회는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2023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산 예비 심사에서는 “법무부와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공석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 유지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를 한 상황이다.⁶⁾

[검찰청 소관 예산의 독립 편성 관련 2019~2021 결산 국회 시정요구 사항]

연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2020년 (2019 회계연도 결산)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 개선 필요	관련 사업명	특별감찰관활동(1800) 프로그램	제도 개선
		시정요구 사항	○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특별감찰관의 장기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관련 예산의 불용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21년 (2020 회계연도 결산)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에 대한 조치 필요	관련 사업명	특별감찰관활동(1800) 프로그램	제도 개선
		시정요구 사항	○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임차관련 예산 지출 등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2021년 내로 임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사무실 임차료 등의 편성에 대하여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국회의 후보자 추천 및 대통령의 지명을 통하여 가능⁷⁾하며 향후 국회와 정부 논의에 따라

6)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참조

7) 「특별감찰관법」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

결정될 사항으로 정확한 임명 계획은 알 수 없지만,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 및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임명 직후 감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직 유지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 미반영으로 조직이 청산되는 경우 특별감찰관 임명 후 조직 재개 준비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신규 사무실 임차 및 사무기구 구입 등 중복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특별감찰관 추천 등이 시작되고 나서 예비비 요청 등을 진행하더라도 감찰활동 추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조직 인원 중 특별감찰관을 제외한 특별감찰관보 및 특별감찰과장, 감찰담당관 7명의 경우 자체 채용 인원으로, 실제 채용에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무실 유무와 무관하게 곧바로 감찰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⁸⁾

따라서, 특별감찰관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불용하거나 특별감찰활동이 없는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무실 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을 최소규모로 편성⁹⁾하여 정부 청사 내로 이전하고 특별감찰관 임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동 프로그램 예산의 유지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8) 유사한 사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경우 2021년 1월 21일 출범 후에 1~2개월 내에 검사·수사관·행정직 등을 충원하고자 예비비를 편성받았으나,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말 기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49.4%에 불과하였다. 이는 공수처 검사의 경우 채용에 통상 4개월이 소요되고 수사관은 통상 3개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실의 경우에도 공수처와 조건은 다르지만 채용에 통상적으로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감찰활동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9) 현재 파견인력 2인, 공무원 근로자 1인으로 총 3인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3인이 근무할 청사 내 소규모 사무공간을 마련하거나, 파견인력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담당인력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식중독균 검출 키트 사업¹⁾은 다수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단체 급식 시 식중독균 검출 키트로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수시로 판독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9,9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다.

[2024년도 식중독균 검출 키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73,235	252,286	269,102	16,816	6.7
수용관리비	134,660	123,278	132,426	9148	7.4
식중독균 검출 키트	-	-	99	99	신규

자료: 법무부

동 사업은 최근 서울구치소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등 교정시설 내 식품 안전 위생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도소 등 교정시설 54개 기관에 매일 1회 식중독균 검출을 위해 배정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식중독균 검출 키트는 각 키트 당 한 개의 균(균)의 판독이 가능²⁾하므로 1개의 해당 키트를 구매하여 매일 검사를 하더라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없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식중독균 검출 키트는 검체 표본 채취 후 배양 및 판독까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532-300의 내역사업

2) 식중독을 유발하는 다양한 식중독균 중에서 특정한 식중독균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 검사 키트를 통해 검사하는 형식으로 단 하나의 키트로 다양한 식중독균이 있음을 판독하는 형식이 아니다.

지 20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당초 계획과 달리 6개월의 기간을 둔 위생점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점검 횟수를 줄여 예산을 1/3 수준으로 감액하여 불시 점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단체 식중독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식중독 검출 키트 구매를 위한 9,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법무부의 예산 각목명세서 상 동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54개 기관에 매일 1회 분의 식중독균 검출 키트를 보급할 예정이며, 해당 키트의 단가는 5천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상 식중독균 검출 키트 사업 예산내역]

(단위: 천원)

내역	2024년 예산액	산출내역
일반수용비		
5. 식중독균 검출 키트	98,550	54개 기관×5,000원×365일

자료: 법무부

식중독은 대장균,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다양한 식중독균(균)에 의하여 유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식중독균 검출 키트는 개별 키트 당 한 개의 균(균)의 판독이 가능하므로 특정 균을 판독할 수 있는 해당 키트를 구매하여 매일 검사를 하더라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식중독균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편성된 단가인 5천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키트도 특정 식중독균의 일부만을 구매할 수 있는 단가인 것으로 보인다.³⁾

또한 법무부는 간이 식중독균 검출 키트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식중독균을 배양 및 판독하여 교정시설 내 집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식중독균 검출 키트는 검체 표본 채취 후 배양 및 판독까지 최소 20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⁴⁾되므로 이러한 소요 시간 동안 단체급식은 이미

3)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의 검사 키트는 해당 단가 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살모넬라 균 등에 대한 검사 키트는 단가 상 구매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완료되므로 사실상 식중독 사건의 발생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예방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식중독균 검출 소요 시간]

구 분	간이 식중독균 검출 키트	외부 전문 분석기관
배양 및 판독 소요 시간	20~24시간	4~5일

자료: 법무부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중독 예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 하고,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전문 분석기관에서 식중독의 원인 등을 규명하기때 문에 간이 검출 키트를 통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다만, 법무부는 예산안 분석보고서 초안 작성 이후, 협의 과정 중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기 관에 식중독균 샘플링 검사를 의뢰하여 다수의 검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식중독균을 검사하겠다는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경 계획은 6개 종류의 식중독균에 대하여 54개 기관에 대하여 연 2 회의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해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식중독균 검출키트 사업 변경 사업계획 요약]

칼도마 등 1개 검체 항목 당 6개 종류의 식중독균 검사 실시

○ 검사 비용 : 18.2만원 × 5개 검체 항목 × 54기관 × 연 2회 = 98백만원

자료: 법무부

만약 이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식중독 예방 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위생점검으로 당초 사업내용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졌는데,

- 4) 어떤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 키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가능한 키트를 기준으로 하였다.

위생관리는 각급 교정시설에 맡기고 법무부는 이를 감독하는 관점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기보다는 불시에 점검대상을 정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위생 점검이라는 목적 달성에도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 횟수를 줄여 예산을 1/3 수준으로 감액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로 관리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게 하는 위생관리 및 점검의 일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2016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집단급식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단체급식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검찰업무 기반정보화 사업¹⁾은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검찰업무 기반 정보화 예산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17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검사정원 증원 대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2,496	31,164	36,865	5,701	18.3
검찰업무 기반정보화	19,582	17,357	17,311	△46	△0.3

자료: 법무부

동 사업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정보시스템 임차료 등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정규직 보수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검찰 인력 증원에 따른 PC등 전산장비 임차료 등도 동 사업에서 집행된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334-500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검사정원법」의 의결을 전제로 증원인력 80명이 사용할 PC, 프린터 등의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법률안의 심의 경과를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검사 증원에 따라 필요한 PC 160대, 프린터 80대 등의 리스를 위해 임차료 2,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검사의 증원을 전제로 하여 편성된 예산이다.²⁾

[2024년도 검사 증원에 따른 전산장비 도입 예산안 편성내역]

- 데스크톱PC 160대 × 943,000원 = 150,880,000원

- 모니터 160대 × 240,000원 = 38,400,000원

- 프린터 80대 × 479,000원 = 38,320,000원

- 일체형PC 10대 × 1,370,000원 = 13,700,000원

합계: 241,300,000원

[임차료] 241,300,000원 × 1.0054(조달수수료) × 0.018(월별리스료율) × 6개월분 = 26,201,126원

자료: 법무부

검사의 정원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정원법」 제1조³⁾는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하고 있고, 정부는 검사의 정원을 2,512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⁴⁾”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검사의 정원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현행 “2,292명”에서 “2,512명”으로 2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각각 40명,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50명이다.

2) 검사 80명('23년 40명, '24년 40명) 증원을 전제로 예산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3)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4) 정부제출안, 의안번호 제2119063호

[개정안에 따른 검사 증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증원규모	40	40	40	50	50	220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제2119063호, 정부제출안,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2. 21.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3년 9월말 현재,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여러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검사정원 증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3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의 임용 시기를 고려하면, 2024년 내 증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비교적 소액의 예산으로 이·전용을 통하여서도 확보가 가능한 규모로 보인다.

[검사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현황]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2-12-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2-21	상정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3-22	상정/축조심사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5-22	상정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6-19	상정/축조심사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7-13	상정/축조심사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따라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PC 160대, 프린터 80대 등의 임차료 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법률안의 심의 경과를 고려하여 반영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5) 로스쿨을 졸업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2월에 채용되며, 경력직 검사의 경우에는 수시 채용이 있으나, 연초 계획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 일정이 진행되므로 검사 80명의 채용이 쉽지 않아 검사 인력 80명의 증원을 2024년에 즉시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채용 사업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 동안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종사하도록 채용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각 실·국별 기본경비(총액) 프로그램¹⁾ 및 소속기관기본경비 프로그램²⁾에 편성된 관련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1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실무 수습 변호사 채용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실·국별 실무수습 변호사관련 편성 예산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법무실기본경비(총액)	425	535	514	△21	△3.9
인권국기본경비(총액)	38	75	61	△14	△18.7
외국인본부기본경비(총액)	28	30	77	47	156.7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259	435	695	260	59.8
검찰국기본경비(총액)	41	45	47	2	4.4
국제법무국기본경비(총액)	-	-	46	46	순증
교정본부기본경비(총액)	0	0	0	0	0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총액)	0	15	16	1	6.7
합 계	791	1,135	1,456	321	28.3

주: 1. 각 세부사업에서 실무 수습변호사 관련 예산만 추출

2. 2023년 8월 국제법무국 신설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률사무종사변호사채용은 법무부 내 여러 실·국 단위의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74명의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59명이 근무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94명의 채용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11

2) 코드: 일반회계 7018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변호사 94명의 채용을 계획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민간 실무수습기관과 비교하여 처우가 부족하고 일부 부서의 경우 실무수습을 하게 되는 업무가 선호되지 않는 업무로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종사변호사제도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동안 법무부 지정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일정하게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만 변호사로서 제한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중 일부를 법무부에서 채용하여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7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59명만이 채용되었고, 2023년에는 2명을 늘린 74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8월말 기준 59명만이 채용되었다.³⁾

[2022~2023년도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실국별 채용계획 대비 실적]

(단위: 명)

실국	2022		2023		2024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법무실	31	31	32	30	33
인권국	5	4	5	4	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2	2	4	5
대검찰청	29	19	29	18	45
검찰국	3	3	3	3	3
국제법무국	-	-	-	-	3
교정본부	0	0	2	0	0
범죄예방정책국	2	0	1	0	1
합 계	72	59	74	59	94

주: 1. 2023년은 8월말 기준

2. 2023년 8월 국제법무국 신설

3. 교정본부는 채용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채용공고를 실시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법률사무종사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 직후 6개월을 근무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 일(2023년 4월) 이후 4개월 이상이 지났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추가적인 채용은 어렵다.

법률사무종사변호사의 채용은 변호사로서 제한 없이 활동하기 위한 전(前) 단계로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의 기간을 거쳐야 하나, 법무부가 아닌 민간 실무 수습기관에서의 근무도 가능하고, 민간과 비교하여 근무여건·처우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중복하여 합격하는 경우에도 민간으로 가기 위해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송무 업무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⁴⁾, 교정본부 및 범죄예방정책국 등의 일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는 법률사무종사변호사의 업무는 송무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져 채용이 쉽지 않다.

[법무부 실·국별 계획 대비 미채용 사유]

-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나 타 기관 및 민간 법인 입사로 임용 포기
- 민간 실무 수습과 비교하여 근무여건·처우 부족으로 미채용
- 맡게 되는 업무가 송무 업무와 관련 없음
- 지원자 부족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계획 대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94명에 해당하는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인건비를 반영하였다.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 45명의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인건비를 반영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익법무관 정원 감소 및 국가소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법률사무종사변호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2023년도 채용계획 29명 중 18명밖에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점⁵⁾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정책국의 경우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채용을 최근 2년간 하지 못하였는데, 민간에 비해 처우도 부족하고, 담당 업무가 소년범죄 관련 법령 검토 및 자문 역할을 하게 되어⁶⁾ 송무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져 선호도가 낮은 편으로 이에

4) 다만, 법무부는 법률 자문 및 상담, 전문분야 관련 법률사무업무 등 비송무 업무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5)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청주지방법검찰청, 부산지방법검찰청, 창원지방법검찰청, 광주지방법검찰청, 제주지방법검찰청의 경우에는 2년 연속 채용하지 못하였고, 주로 비수도권의 지방검찰청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선발공고(2023.4.24.)를 참고하였다.

따라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도에도 채용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따라서, 과년도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채용률을 고려하여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⁷⁾ 및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총액) 사업⁸⁾에 편성된 법률사무종사변호사의 채용관련 예산 감액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7) 코드: 일반회계 7018-202

8) 코드: 일반회계 7011-207

가. 현 황

특정업무경비(250-03목)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법무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567억 5,9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하였다.

[2024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비목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특정업무경비 (250-03목)	14	14	0	0.0
공공수사		1,512	1,542	30	2.0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		4	4	0	0.0
공판활동지원		772	772	0	0.0
과학수사인프라구축		89	89	0	0.0
교도소운영기본경비(총액)		1,201	1,201	0	0.0
교정보부기본경비		176	175	△1	△0.8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43	40	△3	△7.2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2,672	3,395	723	27.1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13	12	△1	△6.0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305	294	△11	△3.5
마약수사		1,228	1,310	82	6.7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		24	22	△2	△10.0
보호관찰활동		2,914	2,948	34	1.2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795	1,169	374	47.0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720	720	0	0.0
소년원생수용		595	590	△5	△0.8
외국인보호관리		2,581	2,582	1	0.0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비목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외국인본부기본경비		37	34	△4	△10.0
외국인사회통합지원		266	266	0	0.0
인권국기본경비		25	28	2	9.2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4,423	4,485	62	1.4
전자감독		320	339	19	6.0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76	76	0	0.0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12	10	△1	△10.0
형사부 등 수사지원		33,768	34,026	258	0.8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543	614	71	13.1
합 계		55,130	56,759	1,628	3.0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¹⁾,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²⁾ 순으로 비중이 크고, 2024년 증가율이 높은 사업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사업이 47%,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이 27.1%, 형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사업이 13.1%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검찰청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1) 코드: 일반회계 1335-301

2) 코드: 일반회계 1335-303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수사 준칙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보완 수사 등 업무량이 증가함을 이유로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개정으로 인하여 검찰 직접수사 및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찰청의 수사 등에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적정규모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활동경비와 일반지출을 하는 부서활동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024회계연도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특정업무경비집행계획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집행 계획이 공개될 경우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정보활동 등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업들의 예산 집행계획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① 개인별 지급 경비의 경우 직급별 단가 및 직급별 인원 정도가 포함되는 것에 그치고, ② 부서활동비의 경우 해당 사업별로 목적 정도만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으로 법무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정보활동 등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수 있다’는 법무부의 자료 미제출 사유는 수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2년도 XX부 특정업무경비 예산]

(단위: 천원)

단위-세부사업	특정업무경비명	예산액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 - ○○○○○○	1. 조사수집비	7,390,400	【개인별지급】 ○ 1급: 120천원/월 ○ 2급: 110천원/월 ○ 3급: 80천원/월
○○○○○○○ - ○○○○○○	4. 활동비	2,428,975	【부서별지급】 ○ □□□□□ 위한 □□□□□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개인별 지급의 경우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 집행계획을 마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며, 그 지급금액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불가능한 상황이다.³⁾

2024년도 예산안 중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분리하여 보면, 전년대비 3.4% 증가한 482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최근 3년간 검찰청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0.5%로 2024년도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면 인원 증가율에 비해 다소 높은 특정업무경비 예산안이 편성된 상황으로 개인별 지급경비의 수준이 증액되었거나 부서활동비가 증액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020~2024회계연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가율 (B-A)/A
검찰청	예산액	46,850	47,033	45,156	46,614	48,214	3.4
	인원	8,311	8,334	8,286	8,443	-	

주: 2023년 인원은 8월 말 현원 기준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법무부는 검찰 업무의 중립성·독립성 및 수사활동 지장 우려 등을 사유로 지급부와 지출부 제출요청도 거부하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 1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업무량이 변화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검찰청 홈페이지의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약 169만 건이었던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2022년에는 30.1% 감소한 약 117만 건으로 나타나, 수사제도 변경 이후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2020년 이후 형사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2020	2021	2022	2023
1,694,482	1,072,653	1,170,810	806,945

주: 2023년은 8월말 기준

자료: 검찰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https://www.spo.go.kr/site/spo/ex/duelistIncidentTrend/incidentScionStat.do>)

또한, 2022년 검찰 직접 수사건수(처리시점 기준)가 2019년 대비 30.4% 감소한 3만 1,455건으로, 최근 여러 차례의 형사사법제도 개정으로 검사의 업무범위 및 형태의 변동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수사 업무의 비중이 감소한 상황이다.⁵⁾

4) 이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건수가 형사사건 접수 건수에 포함되었으나,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이러한 불기소 의견이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러한 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재수사 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5)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는 사건 수 기준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하고, 기존에도 직접수사는 중요 부패·경제범죄 수사에 집중되고 있었으므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찰의 업무량에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검사실 및 수사·조사과) 처리사건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검찰 직접접수 고소·고발 사건(A)	36,059	39,119	36,945	27,726	27,528	17,421
검사인지 사건(B)	9,114	7,724	6,542	4,447	3,927	3,503
검찰 직접수사 사건(A+B)	45,173	46,843	43,487	32,173	31,455	20,924
기 소 (비중)	14,713 (32.6%)	14,051 (30.0%)	12,861 (29.6%)	8,075 (25.1%)	4,781 (15.2%)	3,832 (18.3%)

주: 2023년은 8월말 기준임

자료: 법무부

다만, 이러한 형사사건 접수 및 수사건수 감소에 대하여 법무부는 단순한 형사사건 접수, 처리현황만을 토대로는 검찰업무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2022년 9월 개정됨에 따라 그 이후로는 직접수사가 확대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추후 보완 수사량도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접수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말 기준 2만 924건으로, 지금의 경향을 유지한다고 볼 때, 2022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3년 11월 개정하는 수사준칙의 경우 송치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 수사량의 업무증가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공무원·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운영경비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 상 특정업무경비 예산 요구 관련 규정]

-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공무원·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등 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요구

자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5

따라서, 수사 준칙의 개정 예정으로 인한 검찰 업무량의 증가 측면과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개정으로 인하여 검찰 직접수사 및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적정규모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⁶⁾

6)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건 접수 건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 직접수사, 보완수사 범위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 금융증권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에 대한 합동수사단 운영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 개정 이후 검찰 직접수사 업무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¹⁾은 가족과 떨어져 타지의 검찰청에 근무하게 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철도 운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13,953	14,352	14,711	359	2.5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657	657	657	0	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사업의 복리후생비로 단신부임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지정된 구간(근무지와 주거지 간)을 기차로 이동할 경우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철도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복리후생비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이동이 잦은 타 부처 및 세종시 이전 부처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 유지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을 위해 복리후생비(210-12)로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가족과 떨어져 타지의 검찰청에 근무하게 된 검사 및 검찰수사관²⁾에게 월 8회 범위 내에서 지정된 구간(근무지와 주거지 간)을 철도로 이동할 경우 소요된 비용의 일부(코레일 및 SRT 철도 요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18-252

2) 지원대상은 단신부임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며, 각각의 인원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상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 예산내역]

(단위: 천원)

내역	2024년 예산액	산출내역
[210-12]복리후생비		
2.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657,000	657,000,000원

자료: 법무부

지원기준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모,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주거지와 근무지가 분리된 경우로, 근무지 분리 판단기준은 행정구역상 시·도의 경계로 하며, 주거지와 근무지 간 철도교통을 통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근무지 분리 판단 기준: 시·도 기준]

권역	행정구역	권역	행정구역
서울·경기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권	강원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동 제도와 관련하여 단신부임하게 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대검찰청에 단신부임 회원번호를 신청하면 대검찰청은 해당 직원의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회원번호를 부여하고, 매월 사용액의 50%를 업체(코레일 및 SRT)에 정산해 주고 있으며, 월 8회 이상 사용하거나 지정된 구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① 기업특별회계 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②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④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⑤ 청사 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사적 용도의 교통비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방부 등 단신부임이 많은 부처 및 순환 근무가 많은 부처의 경우 이와 같은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를 편성·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법무부와 대법원은 국방부 등의 부처에서도 법무부의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와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전세객차 제도’의 경우 육로·철로·해상·항공수단으로 병력 및 군수장비·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여 전·평시 군수지원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수행하는 ‘수송활동 사업(2336-301)’에 편성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법무부와 달리 귀가 혹은 귀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군 장병의 출장·휴가·외출·외박·파견·전역·전속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동 시 편의를 보장하고자 지원되는 제도이다.

또한 운행노선 및 좌석 편성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들과 같이 임의로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국방수송훈령」 제64조⁴⁾를 통하여 정기 군전세객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검찰청과 대법원에만 이러한 특수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의 지적이 있자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022. 11. 23.)에서는 검찰·법원 공무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순환 근무를 하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지침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⁵⁾

3) 대법원만이 법원 공무원을 지원하는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4) 「국방수송훈령」

제64조(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의 임무) 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가 수행해야 할 세부 임무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수송은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하며 국수사 통제하에 정기 군전세객차를 운영한다.
(이하 생략)

5) 다만,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 시 부대의견으로써 “법무부와 대법원은 검찰·법원공무원의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과 관련하여 검찰·법원공무원 순환근무의 특수성 및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는 문구로 결정되어 타 부처 공무원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고, 타 부처와 법원 및 검찰청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기준만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안에서도 여전히 순환 근무를 하는 타 부처 공무원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 공무원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사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하고 검사 1호봉의 경우 월 약 335만원 봉급을 받으나 일반직 5급 공무원은 월 약 265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며, 근무 기간이 10년이 되면 검사는 월 657만원을 받으나, 일반직 5급 공무원은 372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2023년도 검사와 공안직 및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

(단위: 원)

호봉	검사	일반직 5급 공무원
1	3,349,800	2,650,700
2	3,774,400	2,757,800
3	4,095,500	2,869,100
4	4,417,100	2,984,600
5	4,750,000	3,103,200
6	5,080,600	3,224,200
7	5,423,400	3,347,000
8	5,788,500	3,471,400
9	6,211,900	3,596,200
10	6,567,300	3,721,900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와 같은 보수 수준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학업 등의 사유로 단신 부임하는 타 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귀가 또는 귀성 시 교통비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검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검찰청운영기본경비의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어 있는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 유지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사업¹⁾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 현지문화관습 및 국제결혼 성공·실패 사례를 소개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0,305	10,532	10,754	222	2.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등	263	315	315	0	0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213	265	265	0	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에 대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가 동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차원에서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유사 사업은 여성가족부로 통폐합하고, 동 사업을 감액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국제결혼 전(前) 단계에서 제도, 배우자 현지문화, 국제결혼 사례 등 정보제공을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233-304의 내역사업

사업으로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전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제결혼(희망) 상대 배우자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인 경우에 참여할 수 있으며, ①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정보 등 소개, ② 결혼이민(F-6)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책 설명, ③ 결혼이민자 상담 및 피해사례 소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④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무부는 2024년도 동 사업 운영을 위해 2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6개 기관에서 월 2회 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비, 교재발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일반수용비(210-01): 265,000천원

- 가. 강사료: 16개기관×100,000원×4명×2회×12월=153,600천원
- 나. 운영비: 16개소×300,000원×12월=57,600천원
- 다. 교재발간 등: 4,502천원×12월=54,020천원
- 라. 계수조정: △220천원

자료: 법무부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²⁾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안은 1,461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1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다.

2) 코드: 양성평등기금 2356-432

[2024년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99,196	107,953	146,131	38,178	35.4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 상 여성가족부의 관련 사업]

□ 가족센터 운영: 34,125백만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733백만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3,873백만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우리사회 미재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방문교육, 언어발달, 통번역, 이중언어 학습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703백만원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입국 전 한국생활 정보 사전제공으로 안정적인 조기정착 및 권익 보호 지원
- 귀환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 자녀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자료: 여성가족부

특히, 불법 국제결혼중개 적발 등 현지 인권보호 감시체계 및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 교육(베트남 3개소, 필리핀 1개소, 태국 1개소) 강화를 통해 초기 정착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³⁾을 통해 강사로 등을 예산을 편성하여,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상호이해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 문화공존을 유도하기 위한 다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사업 등은 여성가족부의 사무로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목적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검찰·행형 등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하기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사무〕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이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⁵⁾에서는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3) 2024년 예산안에는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으로 통합되었다.

4) 다만, 법무부는 사업시행 대상을 결혼전 단계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예정자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차이가 있으나, 건강한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혼당사자를 구분하여 시행기관을 다르게 하여 다문화가족 사업을 나누어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⑤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19.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

20.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리·운영

25.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대하여 권장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상당부분이 결혼중개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에 대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동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⁶⁾

이미 국제결혼 건전화 및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국제결혼예정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동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 등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업무를 다수의 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므로, 주무기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국제결혼 예정자에 대한 교육 사업은 감액하고, 여성가족부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법무부장관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률은 결혼이민 사증발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이를 동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도록 부령을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법제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법제처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455억 1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7억 7,300만원(4.1%) 증가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0,670	43,728	45,501	1,773	4.1

주: 총계기준

자료: 법제처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법제처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26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500만원(2.4%)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정기직제에 따른 정원 증가 및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법제처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20,771	22,142	22,677	535	2.4
인건비	20,771	22,142	22,677	535	2.4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처

[2024년도 법제처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법제처	237	238	1	0.4

자료: 법제처

2024년도 법제처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50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800만원(14.5%)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17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1.3%)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32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500만원(23.1%) 증가하였다.

[2024년도 법제처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3,669	4,394	5,032	638	14.5
총액인건비 대상	1,525	1,732	1,755	23	1.3
총액인건비 비대상	2,144	2,662	3,277	615	23.1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처

2024년도 법제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 제도 운영 예산을 편성(8,100만원)하였고, ② 「행정 기본법」 시행(2023. 3월)으로 확대된 이의신청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의신청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1억 9,000만원)하였으며, ③ 수출기업 등에 해외법령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세계법령정보 서비스 사업을 증액(2023년 11억원 → 2024년 17억원)하였다.

2024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청년인턴 제도 운영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업의 채용연계형 인턴제와 달리 단기 체험형 인턴들에게 주요 업무를 가르쳐줄 유인이 적어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도입 취지에 맞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제처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이 있다.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해외법령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간 PDF 파일로 제공되었던 세계법령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 DB 구축 예산 등이 반영되었다.

[법제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1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116	1,662	546	48.9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법제처

1

청년인턴 제도 운영 사업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청년인턴 제도 운영 사업¹⁾은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23.1.,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라 국내·외 유능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국정참여 및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8,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청년인턴 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221	1,470	1,555	85	5.8
청년인턴 제도 운영	-	-	81	순증	순증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인턴 제도는 기업의 채용연계형 인턴제와 달리 단기 체험형으로 인턴들이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경험을 쌓게 해준다는 본질적인 목표 달성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유사한 기존의 채용 인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이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4-300

청년인턴 제도는 청년의 국정 참여 및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국내외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이 동 사업을 총괄하며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2023년부터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다.²⁾

2024년에는 6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5명은 6개월간, 1명은 3개월간 청년인턴으로 채용할 계획³⁾으로 인건비와 4대보험료 뿐만 아니라, 청년인턴에 대한 활동지원비와 여비 등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

[2024년도 청년인턴 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일용임금(110-04): 68,004천원**

가. 청년인턴 인건비: 68,004천원

- $(2,060,740\text{원} \times 6\text{개월} \times 5\text{명}) + (2,060,740\text{원} \times 3\text{개월} \times 1\text{명}) = 68,004\text{천원}$

□ **일반수용비(210-01): 1,346천원**

가.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1,000천원

나. 조정계수: 346천원

□ **국내여비(220-01): 4,000천원**

가. 청년인턴 활동 여비: 3,600천원

- $50,000\text{원} \times 6\text{명} \times 6\text{월} \times 2\text{회} = 3,600\text{천원}$

나. 조정계수: 4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7,650천원**

가. 청년인턴 4대 보험료 등: 7,650천원

- $68,004,420\text{원} \times 0.112541 = 7,653\text{천원}$

- 조정계수: △3천원

자료: 법제처

현재 청년인턴의 추진방식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로 채용인원을 할당하고 그에 따라 각 부처가 각 부서의 수요를 발굴하여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

2) 2024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 현재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 국무조정실의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으로 2~3개월짜리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로 보인다.⁴⁾ 법제처는 2023년 행정·홍보, 전산, 법무, 외국어·국제외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4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법무 분야 1명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적어 채용하지 못하였다. 2차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채용하지 못한 분야는 없애고, 법제지원 분야로 한정하여 3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현재 총 4인의 청년인턴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별 할당 형식으로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더욱 단순 보조업무나 행사참여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청년인턴 제도는 기업의 채용연계형 인턴제와 달리 단기 체험형으로 인턴들이 업무 경험을 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인턴은 3개월~6개월간 채용⁵⁾되는데 초기 오리엔테이션과 나라배움터 등을 활용한 기본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해충돌방지법, 보고서 작성법 등)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더욱 짧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요업무의 경우 보안상 책임이 뒤따르는 업무가 많아 현직자들이 업무를 위임하기에 제약이 있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⁶⁾으로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단기간 고용되는 청년인턴이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단순 사무·행정보조로만 활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⁷⁾

4) 국무조정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계획”, 2023. 7.

5) 행정안전부는 예산 제약상 117명 전원을 6개월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을 어려워 2~30%의 인원은 3개월 이내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6) 「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 2023년도 2차 청년인턴 채용 공고문에는 법령안 검토, 법령정비 지원과 행정업무 지원으로 담당 업무를 제시하였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단순 행정업무 지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단기 체험형 인턴 사업이 어떠한 사업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2023년 청년인턴 사업의 실시가 청년들에게 업무경험을 쌓게 해준다는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효과성을 검증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0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5억원(14.3%) 증가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4,366	17,683	20,204	2,521	14.3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83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2.7%)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6,384	8,161	8,381	220	2.7
본부 인건비	6,384	8,161	8,381	220	2.7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85	85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43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0.8%) 감소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18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00만원(6.5%)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25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00만원(5.4%) 감소하였다.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3,312	4,404	4,369	△35	△0.8
총액인건비 대상	1,588	1,707	1,818	111	6.5
총액인건비 비대상	1,724	2,697	2,551	△146	△5.4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단계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2023년 19억원 → 2024년 33억원), ②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다(2023년 12억원 → 2024년 23억원).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소속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 계획이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여 예산이 과대 편성되어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적정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없다.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이 있다.

①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사업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4.10.20.)에 따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단계 고도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은 전자적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3차년도 사업비 반영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2개)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	1,925	3,278	1,353	70.3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170	2,330	1,160	99.1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규정

①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 ② 종이문서나 기전자적 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전자적 송부 등

1

공수처 소속 위원회 운영 사업 감액 필요

가. 현 황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¹⁾ 및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사업²⁾은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4,100만원 감액한 9,300만원을,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2,600만원 감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공수처 소속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181	1,970	1,797	△173	△8.8
심의위원회 운영	21	234	93	△141	△60.3
공판활동지원	59	53	49	△4	△7.5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11	53	27	△26	△49.1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분석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심의위원회들의 개최계획이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여 예산이 과대 편성되어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의 적정규모 감액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2-301의 내역사업

2) 코드: 일반회계 1033-301의 내역사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세부사업에서 수사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공판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는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수사관련 심의위원회 사업의 예산안을 보면, 일반수용비 7,900만원, 임차료 500만원, 사업추진비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 별 예산안을 편성하였던 과년도와는 달리 6개 심의위원회의 예산을 통합하여 예산안을 산출하였으며, 공수처에 따르면 총 40회의 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상 수사관련 심의위원회 사업 예산내역]

(단위: 천원)

내역	금액
일반수용비	
11. 심의위원회 운영	78,865
임차료	
1. 수사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장소 임차료	5,000
사업추진비	
2. 수사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비	9,0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사업의 예산안은 일반수용비 2,100만원, 임차료 400만원, 사업추진비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수처에 따르면 8회 개최를 계획하여 편성한 예산이다.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상 공소심의위원회 사업 예산내역]

(단위: 천원)

내역	금액
일반수용비	
1. 공소심의위원회	21,200
임차료	
1. 공소심의위원회의 장소 임차료	4,000
사업추진비	
1.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운영비	1,5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나, 이러한 공수처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2022년 15회의 회의를 계획하였으나,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2023년 역시 같은 상황이다. 감찰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계획대비 33.3% 이하의 개최실적을 보였고 2023년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최근 3개년 간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 계획 및 실적]

(단위: 건)

위원회		2021		2022		2023		2024	비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수사	수사심의위원회	-	1	15	5	15	3	12	
	수사자문단	-	1	15	4	15	2	12	
	영장심의위원회	-	1	15	-	15	-	3	
	공보심의협의회	-	6	20	5	20	1	7	
	감찰위원회	-	-	2	2	2	1	3	2022년 신설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	1	7	1	7	-	3	
	소계	-	10	74	17	74	7	40	
공소	공소심의위원회		2	16	3	14	2	8	

주: 2023년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러한 개최실적의 저조로 인해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참석 수당 및 회의장 임차료 등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22년에는 수사자문단, 정보심의위원회 및 공소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의 경우 예산의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다. 2023년에도 집행률이 10% 이상인 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16%) 및 검찰위원회(25%) 뿐인 것으로 나타나 2023년 역시 상당 규모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22~2023회계연도 공수처 소속 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위원회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수사	수사심의위원회	50	6	12.0	50	8	16.0	93
	수사자문단	68	6	8.8	68	6	8.8	
	영장심의위원회	40	-	-	40	-	-	
	공보심의협의회	66	5	7.6	66	1	1.5	
	감찰위원회	4	3	75.0	4	1	25.0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6	2	33.3	6	-	-	
	소계	234	22	9.4	234	16	6.8	
공소	공소심의위원회	53	10	18.9	53	4	7.5	27

주: 1. 2022년은 제2차 추경예산 기준

2. 2023년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집행부진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2022년, 2023년의 집행액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도한 예산액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사관련 심의위원회의 경우 2022년 총 2,200만원, 2023년 8월말 기준 1,600만원, 공소심의위원회는 2022년 1,000만원, 2023년 8월말 400만원을 집행한 것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감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감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7억 4,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600만원(16.1%) 증가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감사원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64	639	745	106	16.6

자료: 감사원

감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467억 1,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3억 3,600만원(6.8%) 증가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감사원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27,204	137,381	146,717	9,336	6.8

자료: 감사원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감사원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941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900만원(1.8%)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 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감사원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87,702	92,533	94,182	1,649	1.8

자료: 감사원

[2024년도 감사원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감사원	1,080	1,080	-	-

자료: 감사원

2024년도 감사원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35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00만원(0.4%) 증가하였다.

[2024년도 감사원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12,713	13,450	13,502	52	0.4

자료: 감사원

2024년도 감사원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차세대 OASYS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2023년 75억원 → 2024년 163억원), ②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2023년 45억원 → 2024년 32억원).

2024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차세대 OASYS 및 전산센터 구축 사업은 당초 국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된 ISP 수립 예산의 3배로 과업을 추가하여 ISP를 실시하여 사업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ISP 결과 등의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관련 예산은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편이므로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가 의결한 자문결과가 최종 감사결과에 반영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감사원 본원 및 각 지역사무소의 업무망, 인터넷망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는 각 통신망 사업자와 5년 계약이 되어 있어 단가의 변동이 없으므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불용이 예상되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없다.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과 감사교육원 수입대체 경비 사업으로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은 차세대 OASYS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하는 등 2023년 대비 88억 3,000만원 증액한 16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교육생 등 식사 제공을 위해 식당 운영 인력을 위한 상용임금을 반영하는 등 2023년 대비 2억 800만원 증액한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다.

[감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505	16,335	8,830	117.7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376	584	208	55.3

자료: 감사원

II

주요 사업 분석

1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감액 및 자문위원회 자문결과의 효과성 증진 필요

가. 현 황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¹⁾ 사업은 적극행정면책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적극행정 지원	314	341	265	△76	△22.3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11	24	27	3	12.5

자료: 감사원

나. 분석의견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사업은 개최를 10회, 자문료 지급은 총 50회를 대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개최실적은 5~7회에 불과하고, 자문료 지급은 25~35회에 불과하므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일부 감액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1-304의 내역사업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조성과 감사 수감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지감사 종료 후 신청인이 적극행정지원과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면책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제도 개요]

- 제도 신설: 2018. 3.
- 목적 및 기대효과
 -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외부인의 시각으로 면책 여부를 심사하여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객관성 제고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세부분야 전문가(10명) 및 일반행정 전문가(20명, 공직경험자 10명 포함)를 포함한 총 30명으로 구성
 - 매 회의 시 안건 내용에 따라 세부 분야 및 일반 전문가로 총 5명을 선정

자료: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은 2,700만원으로 연 10회의 개최계획과 5인의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회의경비 및 자문료 등이 편성되어 있다.

[2024년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27백만원**
 - 가. 회의경비 등(2백만원)
 - **10회**×20만원=2백만원
 - 나. 자문료(20백만원)
 - **10회**×40만원×**5명**=20백만원
 - 다. 감사권익보호관 지원 경비(2백만원)
 - 10회×20만원=2백만원
 - 라.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 위원회 심사비(3백만원)
 - 1회×50만원×6인=3백만원

자료: 감사원

그러나, 2020년 이후 실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개최 횟수는 5~7회에 불과하고 자문료 집행실적은 25~35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의 감액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계획 대비 개최 실적]

(단위: 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최	자문료 지급	개최	자문료 지급	개최	자문료 지급	개최	자문료 지급	개최	자문료 지급
계획	-		-		10	50	10	50	10	50
실적	6	30	7	35	5	25	5	24		

주: 1. 자문위원 참석인원 누계

2. 2023년은 8월 말 기준

자료: 감사원

둘째,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적극행정면책 대상으로 의결한 자문결과가 최종 감사결과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²⁾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외부의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하고자 출범한 위원회로 감사원 감사를 의식하여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일하게 되는 양태를 방지하기 위한 면책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그러나, 2020~2022년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서 면책 대상으로 “인정” 의결한 자문결과 4건 중에서 그대로 최종감사결과 면책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으며, 1건은 최종감사결과 상 “일부” 인정을 받았고, 1건은 “불문(종결)”되었다.³⁾

외부 전문가인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시각이 감사위원회의 판단하는 것과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 최종감사결과를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3. 8., p.140 참고

3) 이러한 상황의 발생에 대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는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하며, 내년 4월까지 시정에 준하는 보고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판단할 때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자문에 대한 운영실적]

연도	신청건수	적극행정면책 자문위 자문결과	최종감사결과
2020	13건	인정 1건	불인정
2021	13건	인정 2건	일부인정 1건, 불인정 1건
		일부인정 5건	일부인정 5건
2022	8건	인정 1건	불문(종결)
		일부인정 2건	일부인정 1건, 불인정 1건

주: 1. 불문(종결)이란, 제도개선(통보)처리한 것으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은 건임.

2. 2020년의 인정/불인정 동수는 최종감사결과

자료: 감사원

따라서,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차세대 OASYS 시스템 및 전산센터 구축 사업¹⁾은 감사원의 업무포털시스템(OASYS)과 전산센터를 재구축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10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차세대 OASYS 시스템 및 전산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567	7,505	16,335	8,830	117.7
OASYS 구축·운영	3,168	2,290	13,292	11,002	480.4
차세대 OASYS 시스템 및 전산센터 구축	-	-	10,984	순증	순증

자료: 감사원

동 사업은 2023년 완료된 차세대 OASYS 및 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OASYS 시스템 H/W 및 상용 S/W 구입비 96억, 전산센터 구축비 7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차세대 OASYS 및 전산센터 구축 사업은 당초 국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된 ISP 수립 예산의 3배로 과업을 추가하여 ISP를 실시하였고, 그 ISP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승인받은 ISP 수립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 ISP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4-309의 내내역사업

감사원은 2024년도 예산안에 차세대 OASYS 시스템 및 전산센터 구축을 위해 임차료(210-07) 1억 5,000만원, 연구용역비(260-01) 4억 2,900만원, 자산취득비(430-01) 103억 1,800만원, 공사비(420-03) 8,800만원 총 10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차세대 OASYS 및 전산센터 구축 사업 예산 현황]

□ 임차료(210-07): 150,000천원

차세대 OASYS 구축 사무실 임차료: 150,000천원

가. 사무실 임차료: 150,000천원
 $(30,000,000\text{원} \times 10\text{개월}) \times 0.5$

□ 연구용역비(260-01): 428,861천원

1. 차세대 OASYS 구축감리비: 382,472천원
 $(605,683,132\text{원} + 69,568,313\text{원}) \times 0.4998$
2. 차세대 OASYS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비용: 46,389천원
 $9,805,744\text{원} \times 16.8 \times 1.1 \times 0.256$

□ 공사비(420-03) : 88,000천원

1. 전산센터 구축비
 - 가. 인테리어 공사 55,000천원
 - 나. 통신케이블 공사 33,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10,317,638천원

2. 차세대 OASYS 시스템 H/W 및 상용 S/W 구입: 9,588,638천원
 - 가. 차세대 OASYS 구축 H/W 구입: 8,337,242천원
 - 나. 차세대 OASYS 구축 S/W 구입: 1,207,297천원
 - 다. 조달수수료: 47,827천원
 $25,172,213,213\text{원} \times 0.38\% \times 0.5$
 - 라. 단수조정 -3,728천원
3. 전산센터 구축비: 729,000천원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용역을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ISP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감사원은 “차세대

OASYS 및 전산센터 구축” 사업 발주 및 제안요청서의 기초자료로써 입찰 공고 전 유출 및 배포 시 향후 경쟁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ISP 결과를 제출하는 타 중앙행정기관은 경쟁 입찰의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이미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기획재정부 등에는 제출하였으면서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은 예산의 편성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제출이 필요하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는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동 ISP의 산출결과를 보면 총 사업비 278억 3,300만원의 사업기간 10개월의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과가 나왔고⁴⁾, 감사원은 동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며, 2년에 걸쳐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2024년에는 1년차 예산만이 편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결과]

(단위: 백만원, %)

ISP		ISP 산출결과		
이행여부	이행기간	총사업비용	2024년비용	총사업기간
완료	2022. 12. 26. ~2023. 4. 25.	27,833	27,833	10개월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동 사업은 ISP 수립 과정에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ISP 용역 발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용역을 위해 2022년도 예산으로 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감사원에서는

2) 추가적으로 ISP 결과보고서에 현재 감사원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및 서버 구성도, 보안장비 현황 등이 포함되어 정보 보안상의 우려가 있음도 사유로 거부사유로 제시하였다.

3)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에 앞서 ISP 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통요구자료 II-3을 참고하였다.

7월에 3억원을 전용 증액하여, 그 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연도 말에 4억 1,9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다.⁵⁾

그러나, ISP 사업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WGCMA 통합 포털시스템, 온라인 공익감사청구 시스템, 감사연구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범위 확대는 국회가 심의하지 않은 새로운 신규사업 추진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⁶⁾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범위 비교]

당초(5월/6월)	전용을 통한 사업 범위 확대(9월)
ISP 예산: 1억 4,700만원	ISP 예산: 4억 1,900만원(전용 증 3억원)
① 차세대 OASYS 구축 방안 수립	좌동
② 디지털 감사지원 강화 방향 수립	좌동
③ 전자감사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좌동
④ OASYS 고도화 방안 수립	④ OASYS 고도화 방안 수립
○ 감사역량 진단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좌동
○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좌동
<추가>	○ 의장국인 감사원과 회원국 간 의사소통을 위한 WGCMA 통합 포털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추가>	○ 감사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학술지, 논문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감사연구 오픈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추가>	○ 온라인 공익감사청구 시스템 및 감사원 방문자 통합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5) 감사원은 이에 대해 2022년 5월과 6월에 입찰공고(추정가격 1억 4,300만원) 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1개 업체 밖에 입찰에 응하지 않아 유찰되자 “ISP 수립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업체들의 참여 유도 및 추가 과업 수행”을 사유로 당초 예산의 2배를 초과하는 3억원을 전용 증액하여 4억 1,900만원으로 동 ISP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I)」, p.137 참조

당초(5월/6월)	전용을 통한 사업 범위 확대(9월)
⑤ 인프라 강화 방안 수립	좌동
⑥ 사용자 지원체계 및 정보보안 강화 방안 마련	좌동
⑦ 관련 규정 정비 등	⑦ 관련 규정 정비 등
○ 디지털 감사환경 구현을 위한 감사원 관련 규정 정비 계획 수립	좌동
○ 차세대 OASYS 구축·운영을 위한 이행 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좌동
<추가>	○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관리 기준 수립
<추가>	○ 감사원 내 정보시스템간 기관코드, 부서 코드 등 표준코드체계 도입 및 코드체계 일원화 방안
<추가>	○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실태 관리
⑧ 감사원 전산센터 구축 방안 수립	좌동

주: 감사원의 당초 제안요청서와 변경된 제안요청서를 통해 재작성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I)」

특히, 당초 국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된 ISP 수립 예산의 범위 내에서 ISP를 실시하였다면, ISP결과에 따른 사업 규모도 현재의 총 사업비에 비해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원은 타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3배의 비용을 투입하여 과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ISP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278억 3,300만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1년차 예산이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상황이다.

따라서, ISP 결과보고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확대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공요금 및 제세¹⁾는 감사원의 업무포털시스템(OASYS) 이용 등을 위한 업무망 및 인터넷망 전용회선 사용료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OASYS 구축·운영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567	7,505	16,335	8,830	117.7
OASYS 구축·운영	3,168	2,290	13,292	11,002	480.4
공공요금 및 제세	103	143	143	0	0

자료: 감사원

나. 분석의견

감사원 본원 및 각 지역사무소의 업무망, 인터넷망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는 각 통신망 사업자와 5년 계약이 되어 있어 단가의 변동이 없으므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예상되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감액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 OASYS 구축·운영 사업의 전용회선 사용료를 전년과 동일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다. 감사원 본원은 7,200만원, 광주, 부산, 대구, 수원사무소는 각각 1,800만원으로 각각 업무망과 인터넷망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를 편성하였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4-309의 내역사업

[2024년도 OASYS 구축·운영 사업 전용회선 사용료 예산내역]

(단위: 천원)

내역	2024년 예산액	산출내역
[210-02]공공요금및제세		
1. 본원 업무망, 인터넷망 전용회선 사용료	71,570	2,476,100원×12월+3,488,100원×12월
2. 광주사무소 전용회선 사용료	17,820	623,700원×12월+861,300원×12월
3. 부산사무소 전용회선 사용료	17,820	623,700원×12월+861,300원×12월
4. 대구사무소 전용회선 사용료	17,820	623,700원×12월+861,300원×12월
5. 수원사무소 전용회선 사용료	17,820	623,700원×12월+861,300원×12월
6. 단수조정	150	150,000원
합 계	143,000	

자료: 감사원

그러나, 동 사업 예산의 경우 2022년에는 1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각목 명세서에 편성된 본원 및 각 지역사무소의 경우 통신망 사업자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계약이 되어 있어 2024년도에도 사용료 단가의 변동이 없다.²⁾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 내역]

통신사	이용처	금액(월)	회선	계약 기간
○○○	본원 업무망, 인터넷망	4,404,310	7회선	2021. 6. 9. ~ 2026. 6. 6.
	부산사무소 업무망			
	대구사무소 업무망, 인터넷망			
	수원센터 업무망, 인터넷망			
	수원센터 인터넷망			
□□□	부산사무소 인터넷망	1,887,990	3회선	2021. 6. 9. ~ 2026. 6. 6.
	광주사무소 업무망, 인터넷망			
△△△	명동사무소 등 업무망, 인터넷망	2,276,450	4회선	무약정
합 계		8,568,750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5년 장기계약 외에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명동사무실 등을 위해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추가 전용회선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임시 임차사무실 등에 대한 전용회선 비용과 증원 등의 소요가 있어 일부 집행액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임차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사무실의 사용료가 절감될 것이고, 증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기존의 30% 이상의 회선사용료를 지출할 만큼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기존과 유사한 규모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업무망 및 인터넷망 회선 사용료 예산 감액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

현 황

가. 총수입 · 총지출

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등기특별회계) 및 1개 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9,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9억원(△10.8%)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865억원, 등기특별회계 3,201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59억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 대법원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649,718	932,516	806,653	△125,863	△13.5
- 일반회계	406,097	568,080	486,535	△81,545	△14.4
- 등기특별회계	243,621	364,436	320,118	△44,318	△12.2
기 금	75,988	90,906	105,906	15,000	16.5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5,988	90,906	105,906	15,000	16.5
합 계	725,706	1,023,422	912,559	△110,863	△10.8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조 1,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754억원(3.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8,562억원, 등기특별회계 2,363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16억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 대법원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1,933,074	2,013,406	2,092,465	79,059	3.9
- 일반회계	1,705,533	1,775,798	1,856,162	80,364	4.5
- 등기특별회계	227,541	237,608	236,303	△1,305	△0.5
기 금	71,864	75,244	71,596	△3,648	△4.8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1,864	75,244	71,596	△3,648	△4.8
합 계	2,004,938	2,088,650	2,164,061	75,411	3.6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나. 세입·세출예산안

대법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9,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0억원(△15.0%)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05억원, 등기특별회계 3,831억원이다.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06,097	738,291	610,500	△127,791	△17.3
특별회계	317,306	430,263	383,140	△47,123	△11.0
합 계	723,403	1,168,554	993,640	△174,914	△15.0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대법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2,3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32억원 (1.5%)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562억원, 등기특별회계 3,831억원이다.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705,532	1,775,798	1,856,162	80,364	4.5
특별회계	249,256	430,263	383,140	△47,123	△11.0
합 계	1,954,788	2,206,061	2,239,302	33,241	1.5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다. 기금운용계획안

대법원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1억원 (16.1%) 증가하였다.

[2024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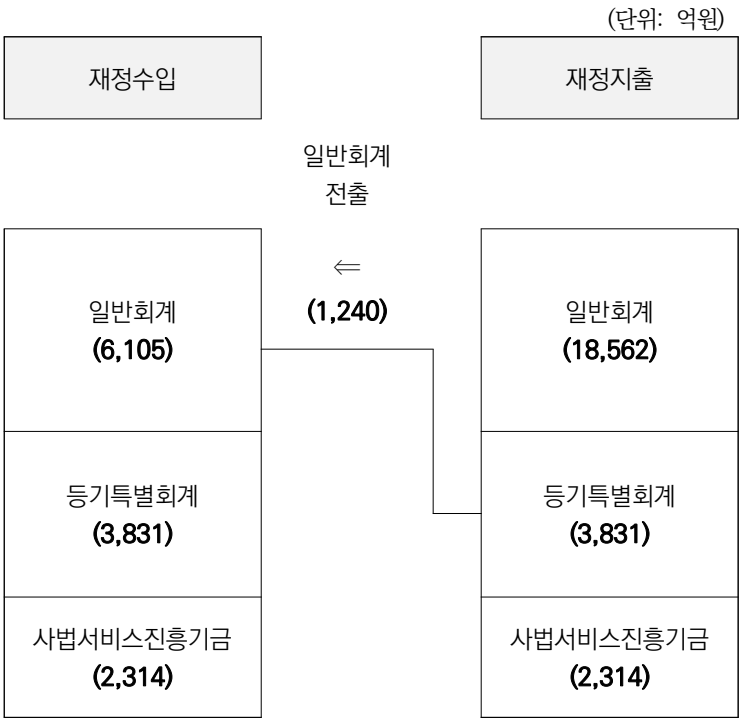
구 분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33,285	199,285	231,369	32,084	16.1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라. 재정구조

2024년도 예산안의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 1,239억원이 전출된다.



주: 총계기준
 자료: 대법원

마.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1조 4,392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1억 7,200만원(4.7%)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정기 직제 및 수시직제로 인한 27명의 증원과 호봉상승분 및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1,326,810	1,375,093	1,439,265	64,172	4.7
본부 인건비	1,184,406	1,228,315	1,288,541	60,226	4.9
도서관 인건비	5,711	6,327	6,712	385	6.1
연수원 인건비	7,786	8,082	9,019	937	11.6
교육원 인건비	6,004	6,224	6,971	747	12.0
등특 인건비	122,903	126,145	128,022	1,877	1.5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2024년도 대법원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대법원	16,096	16,123	27	0.2

자료: 대법원

2024년도 대법원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총액인건비 비대상)은 891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100만원(1.8%) 증가하였다.

[2024년도 대법원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80,801	87,575	89,116	1,541	1.8
총액인건비 대상	-	-	-	-	-
총액인건비 비대상	80,801	87,575	89,116	1,541	1.8
본부 기본경비	71,948	77,361	80,254	2,893	3.7
도서관 기본경비	792	804	804	-	-
연수원 기본경비	2,482	2,691	2,170	△521	△19.4
교육원 기본경비	1,326	1,661	1,615	△46	△2.8
등특 기본경비	4,253	5,058	4,273	△785	△15.5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2024년도 대법원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4. 10. 20. 시행)에 따른 형사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2023년 38억원 → 2024년 126억원), ② 재판절차 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을 위한 소송구조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다.(2023년 59억원 → 2024년 69억원)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운영 사업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건수가 2020년 이후 매년 100건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안 상 계획은 272건으로 다소 높은 측면이 있어 불용이 예상되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활성화 등의 여론도 있는 상황이므로 배심원 일당 및 여비 등에 대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다.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제정, 시행 2024. 10. 20.)에 따른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연차별 소요에 따른 예산의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8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다.

[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3,829	12,585	8,756	228.7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1

진술조력인 사업 감액 필요 등

가. 현 황

진술조력인 사업¹⁾은 재판과정에서 사전협의기일 및 증인신문기일에 참석하여 조력한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진술조력인 제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재판절차비용지원	38,091	36,828	39,073	2,245	6.1
진술조력인 제도	5	30	30	0	0

자료: 법무부

진술조력인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이를 총괄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43-403의 내역사업

[진술조력인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개 요	- 진술조력인 제도는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임 -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인력임
지원대상	-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장애인 대상 범죄의 피해자, 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으로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풍부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맞춤형 조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방법 등을 조언함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9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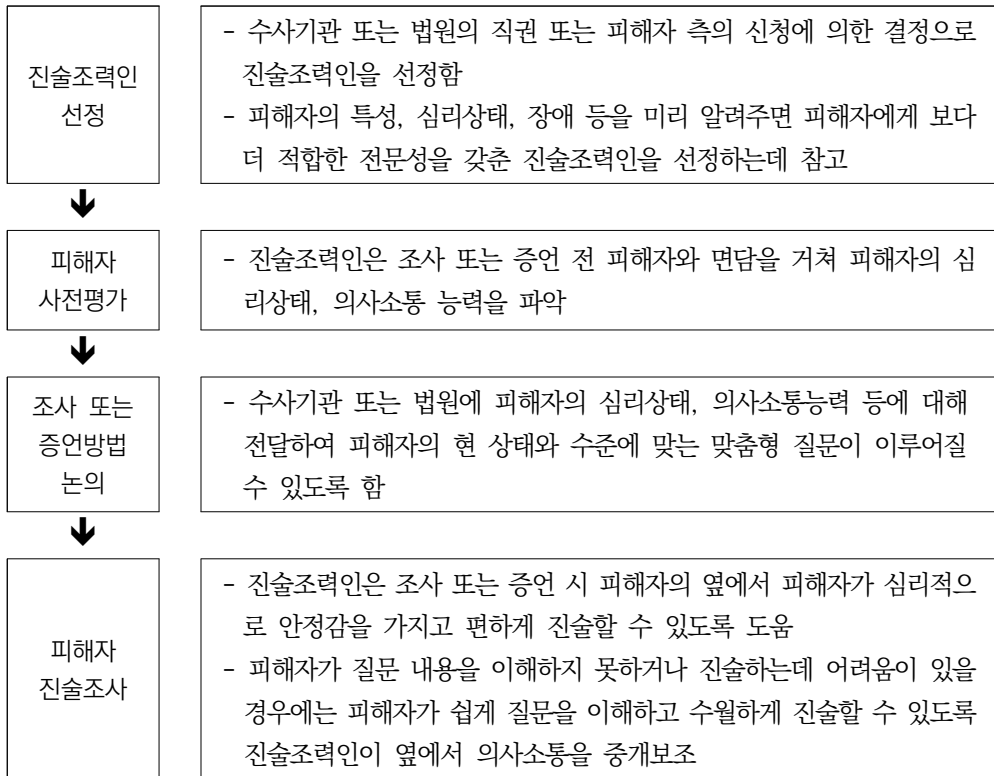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진술조력인 사업은 재판과정에서 2024년도 진술조력인 선정 예상건수를 약 96건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14~22건에 불과하고, 수사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조사를 이미 한 상황으로 재판과정에 재차 증인신문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선정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최근 3개년간의 선정 건수를 고려하여 예산 감액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수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재판절차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선정되고, 피해자와의 사전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한 후 조사 과정(수사) 또는 증인신문 과정(재판)에서의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고 있다.

[진술조력인 지원 절차]



자료: 법무부

즉, 수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재판절차에서는 법원이 각각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고 수당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로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증개하거나 보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증인을 조력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2023년부터 1회당 3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2024년도 예산안에는 아동 장애인 대상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예상 사건 수 중에서 약 6%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진술조력인 예산안 편성내역]

• 진술조력인 수당: 30 → 30백만원 (전년 동)

- 1,595건(2024년 진술조력인 선정 예상 사건수) × 6%(진술조력인 예상 선정율) × 30만원(단가) × 1회
- * 2024년 예상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사건수(1심): 1,595건(향소심 사건수는 제외함)
- * 2022. 12. 대법관회의에서 성폭력범죄 등 사건 진술조력인 2023년 수당을 매건 각 금 30만원으로 의결

자료: 대법원

이에 따르면 진술조력인 선정 예산을 약 96건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실제 대법원의 진술조력인 지원 건 수를 보면 최근 3년간 14 ~ 22건에 불과하였으며, 2023년 8월말 기준 16건으로 2023년에도 30건 이하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진술조력인 선정 및 지원 건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지원 건수	19건	22건	14건	16건

주: 2023년은 8월말 기준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이 진술조력인이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수사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진술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재차 증인신문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자제되는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조력인 선정 및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예상치 못한 사업비용 급증이 발생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작아 세목조정이나 내역변경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근 3개년간 선정 및 지원 건수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본부 기본경비 사업¹⁾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 기본경비	71,948	77,361	80,254	2,893	3.7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500	500	500	0	0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본부 기본경비 사업의 복리후생비로 단신부임한 직원이 지정된 구간(근무지와 주거지 간)을 기차로 이동할 경우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철도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복리후생비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이동이 잦은 타 부처 및 세종시 이전 부처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심 의과정에서 해당 사업 유지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24년도 예산안에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을 위해 복리후생비 (210-12)로 5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가족과 떨어져 타지의 법원에 근무하게 된 법관 및 일반직원²⁾에게 월 8회 범위 내에서 지정된 구간(근무지와 주거지 간)을 철도로 이동할 경우 소요된 비용의 일부(코레일 및 SRT 철도 요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11-250

2) 주로 판사 또는 일반직원 중 사법보좌관이 대상이 된다.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상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 예산내역]

(단위: 천원)

내역	2024년 예산액	산출내역
[210-12]복리후생비		
7.단신 부임 근무자 지원	500,000	500,000,000원

자료: 대법원

지원기준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모,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주거지와 근무지가 분리된 경우로, 근무지 분리 판단기준은 행정구역상 시·도의 경계로 하며, 주거지와 근무지 간 철도교통을 통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근무지 분리 판단 기준: 시·도 기준]

권역	행정구역	권역	행정구역
서울·경기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권	강원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동 제도와 관련하여 단신부임하게 된 직원이 대법원에 단신부임 회원번호를 신청하면 대법원은 해당 직원의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회원번호를 부여하고, 매월 사용액의 50%를 업체(코레일 및 SRT)에 정산해 주고 있으며, 월 8회 이상 사용하거나 지정된 구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① 기업특별회계 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②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④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⑤ 청사 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사적 용도의 교통비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방부 등 단신부임이 많은 부처 및 순환 근무가 많은 부처의 경우 이와

같은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를 편성·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국방부 등의 부처에서도 대법원의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와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전세객차 제도’의 경우 육로·철로·해상·항공수단으로 병력 및 군수장비·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여 전·평시 군수지원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수행하는 ‘수송활동 사업(2336-301)’에 편성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대법원과 달리 귀가 혹은 귀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군 장병의 출장·휴가·외출·외박·파견·전역·전속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동 시 편의를 보장하고자 지원되는 제도이다.

또한 운행노선 및 좌석 편성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들과 같이 임의로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국방수송훈령」 제64조⁴⁾를 통하여 정기 군전세객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제도와의 차이가 있다.

한편, 대법원과 대검찰청에만 이러한 특수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의 지적이 있자 2023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022. 11. 23.)에서는 검찰·법원 공무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⁵⁾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안에서도 여전히 순환 근무를

3) 법무부만이 검찰 공무원을 지원하는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4) 「국방수송훈령」

제64조(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의 임무) 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가 수행해야 할 세부 임무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수송은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하며 국수사 통제하에 정기 군전세객차를 운영한다.
(이하 생략)

5) 다만,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 시 부대의견으로써 “법무부와 대법원은 검찰·법원공무원의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과 관련하여 검찰·법원공무원 순환근무의 특수성 및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는 문구로 결정되어 타 부처 공무원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고, 타 부처와 법원 및 검찰청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기준만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하는 타 부처 공무원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 공무원에세만 이러한 특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관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하고 법관 1호봉의 경우 월 약 335만원 봉급을 받으나 일반직 5급 공무원은 월 약 265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며, 근무 기간이 10년이 되면 법관은 월 657만원을 받으나, 일반직 5급 공무원은 372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2023년도 판사와公安직 및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

(단위: 원)

호봉	판사	일반직 5급 공무원
1	3,349,800	2,650,700
2	3,774,400	2,757,800
3	4,095,500	2,869,100
4	4,417,100	2,984,600
5	4,750,000	3,103,200
6	5,080,600	3,224,200
7	5,423,400	3,347,000
8	5,788,500	3,471,400
9	6,211,900	3,596,200
10	6,567,300	3,721,900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이와 같은 보수 수준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학업 등의 사유로 단신 부담하는 타 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귀가 또는 귀성 시 교통비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법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부 기본경비의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어 있는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 유지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¹⁾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 참여재판 실시를 위한 제도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사법서비스 향상	10,703	13,128	13,469	341	2.6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1,500	2,077	2,077	0	0

자료: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제도로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 결정²⁾³⁾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심원은 무작위로 추출된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6

2)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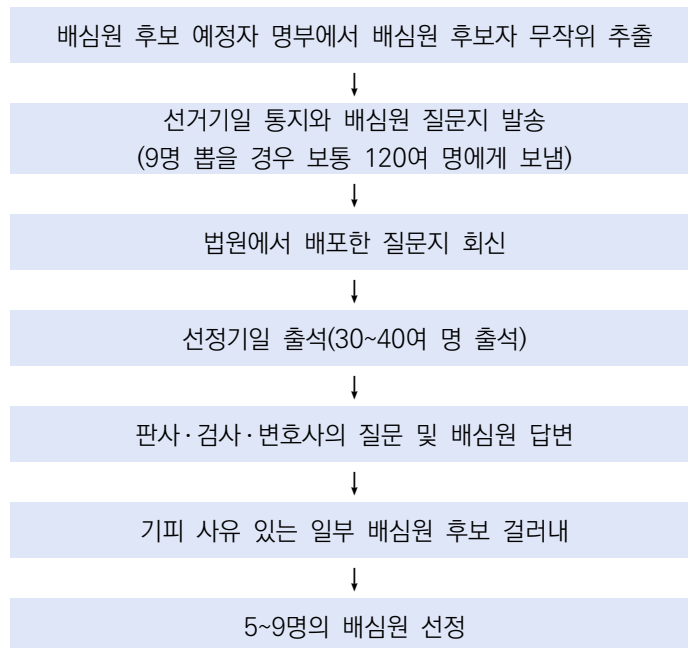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

배심원 선정과정을 보다 자세히 보면, 지방법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배심원 후보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중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면 법원⁴⁾이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있다.

[배심원 선정 절차]



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필요시 검사·변호인도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나. 분석의견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건수가 2020년 이후 매년 100건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안 상 계획은 272건으로 다소 높은 측면이 있어 불용이 예상되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활성화 등의 여론도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배심원 일당 및 여비 등에 대한 적정규모의 예산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272회의 국민참여재판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배심원의 일당 및 여비 10억 7,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7,700만원의 국민참여 재판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6-1. 기본운영비 등: 674 → 674백만원 (전년 동)
 - 기본운영비: 246 → 246백만원 (전년 동)
 - 용지대 등 소모품: 300 → 300백만원 (전년 동)
 - 특근매식비: 64 → 64백만원 (전년 동)
 - 배심원 회의 운영: 37 → 37백만원 (전년 동)
 - * 5천원(다과비)×10명×272건×2.7회
 - 참여재판 관련 담당재판부 회의: 27 → 27백만원 (전년 동)
 - * 58개 재판부×5명×5천원(다과비)×12월×1.6회
- 6-2. 국민참여재판 해외자료수집: 52 → 52백만원 (전년 동)
 - 해외자료 수집: 52백만원
- 6-3. 국민참여재판제도 교육 홍보: 186 → 186백만원 (전년 동)
- 6-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및 여비: 1,070 → 1,070백만원 (전년 동)**
 - 배심원 일당 및 여비: 1,070백만원
 - 배심원후보자 일당 및 여비: 437백만원
 - 배심원 일당 및 여비: 581백만원
 - 식비: 36백만원
 - 격리수당: 9백만원
 - 숙박료: 7백만원
- 6-5.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25 → 25백만원 (전년 동)
- 6-6. 국민참여재판 사법참여기획단 운영: 70 → 70백만원 (전년 동)

자료: 대법원

그러나 2020년 이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건은 100건을 넘긴 적이 없는데, 국민참여재판의 접수가 있더라도 법원이 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을 시 또는 공동 피고인이 거부할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고, 신청인 자체가 취소하는 사례 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연도별 시행 건수]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8월 기준)	2024 (계획)
신청(접수)	630	865	767	811	476	-
배제	187	293	306	241	-	-
철회	263	387	393	480	-	-
대기	128	217	201	199	-	-
시행	175	96	84	92	63	272

주: 1. 배제는 법원의 결정이고, 철회는 신청인의 철회이며, 대기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뜻함.

2. 2023년의 경우 8월 기준이며, 신청 및 시행 이외에는 연말 집계예정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하므로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의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 시행 건수가 계획 건수에 비해 크게 낮음에 따라 배심원(후보자)의 일당 및 여비의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약 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실제 국민참여재판 시행건수에 비해 불용액의 규모가 다소 적으므로,⁵⁾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예산이 편성된 목적 하에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말 기준 예산집행액 역시 13.7%인 2억 7,500만원으로 교육·홍보비나 해외자료수집비, 조사연구비 등이 연말까지 모두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8월말

5) 배심원 일당 및 여비와 기본운영비 등에 편성된 예산이 약 16억으로 이를 모두 일반수용비목으로 편성하였는데, 계획건수는 272건임에 비해 시행건수가 92건에 불과하므로 집행관리에 미비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건수가 63건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배심원 일당 및 여비와 기본운영비 등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2,007	1,500	2,007	275	2,007

주: 2023년은 7월말 기준

자료: 대법원

다만, 대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2024년에는 실시 건수 증가가 예측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낮은 과년도 시행 건수 측면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의 수가 다소 증가추세에 있다는 양 측면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운영 관련 예산 중 배심원 일당 및 여비와 기본운영비 등의 적정예산 규모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헌법재판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6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00만원(1,543.6%) 증가하였다.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5	39	641	602	1,543.6

주: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567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000만원(2.3%) 증가하였다.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0,072	55,492	56,742	1,250	2.3

주: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한편, 헌법재판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335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300만원(5.3%)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정기 직제에 따른 정원 증가 및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29,813	31,860	33,533	1,673	5.3
인건비	29,813	31,860	33,533	1,673	5.3

주: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2024년도 헌법재판소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헌법재판소	348	352	4	1.1

자료: 헌법재판소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74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200만원(6.8%) 증가하였으며, 전액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이다.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6,088	6,967	7,439	472	6.8
총액인건비 대상	-	-	-	-	-
총액인건비 비대상	6,088	6,967	7,439	472	6.8

주: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2024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노후 터보냉동기 교체 및 본관 외벽 보수 등 업무 인프라 개선 예산이 편성되었고, ②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 및 전자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정보화 예산이 반영되었다.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 방지를 위해 향후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급 변동 및 결원 보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전자도서관운영’ 사업으로 전자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을 위한 예산소요가 반영되었다.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00만원(31.0%) 증액된 3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2024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300	300	393	93	31.0

자료: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인건비¹⁾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억 7,300만원 증액된 335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헌법재판소 인건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29,813	31,860	33,533	1,673	5.3

자료: 헌법재판소

나. 분석의견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 방지를 위해 헌버는 향후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급 변동 및 결원 보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인건비 불용률은 예산액(추경) 대비 7.3%, 6.7%, 4.6%로 확인되는데, 정부 전체(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기준)의 인건비 불용률은 1.2%, 2.3%, 1.6%이고 대법원의 인건비 불용률은 3.2%, 1.9%, 0.1%로 타 기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7002-101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정부, 대법원 인건비 불용률 현황]

(단위: %)

연도	헌법재판소	정부	대법원
2020	7.3	1.2	3.2
2021	6.7	2.3	1.9
2022	4.6	1.6	0.1

자료: 헌법재판소

최근 4년간 헌법재판소 인건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추경) 대비 집행률은 2019년 5.4%에서 2022년 4.6%로 개선되긴 했으나, 2022년도는 인건비 예산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4년간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본예산	추경						
2019	27,905	27,905	-	-	27,905	26,403	1,502	5.4
2020	30,139	29,578	-	-	29,578	27,377	2,201	7.3
2021	31,280	31,280	-	-	31,280	29,167	2,113	6.7
2022	31,280	31,237	-	-	31,237	29,813	1,424	4.6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퇴직, 휴직 등에 의한 결원 발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과부족 현황을 보면 2019년에 17명 부족, 2020년에 8명 부족으로 일부 개선되었으나, '21년과 '22년 말 기준 각각 17명과 15명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정현원 및 인건비 불용사유]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정원 (A)	현원 (B)	과부족 (B-A)	인건비 불용액	인건비 불용사유
2019	310	293	△17	1,502	○퇴직, 휴직 등에 의한 결원 발생 ○고위직 보수 동결에 따른 인건비 절감
2020	330	322	△8	2,201	○퇴직, 휴직 등에 의한 결원 발생 ○고위직 보수 동결에 따른 인건비 절감
2021	337	320	△17	2,113	○퇴직, 휴직 등에 의한 결원 발생 ○고위직 보수 동결에 따른 인건비 절감
2022	343	328	△15	1,424	○퇴직, 휴직 등에 의한 결원 발생 ○고위직 보수 동결에 따른 인건비 절감

주: 정원·현원은 매년 12월 말 기준 인원

자료: 헌법재판소

연도 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연례적인 현원 부족은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저해하고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향후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급 변동 및 결원 보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3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78-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506-10

ISBN 979-11-6799-178-2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